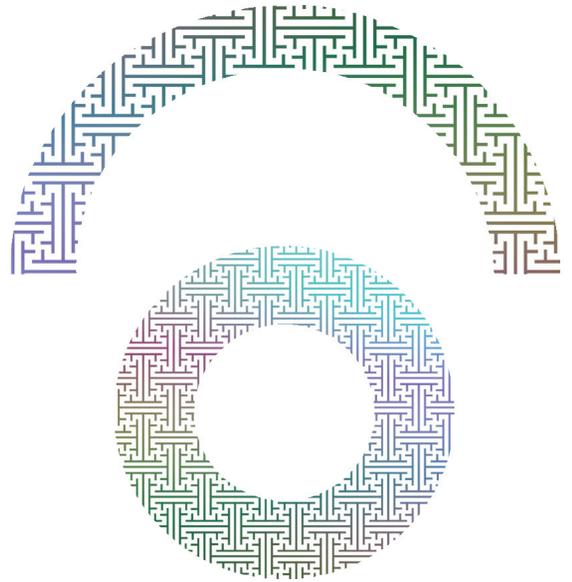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 연구진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연구 요약

###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및 사무를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것임
- 2003년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과 2008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반발, 추진력의 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대정부 정책건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함

### □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7대 분야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이양 대상 기능을 추출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천안지청·보령지청),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대상이 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기준은 선행 연구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기존 특별행정기관 이양 사례에 관한 문헌 분석, 통계자료 분석, 면담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함

□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판단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는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기능 중복성을 검토함
  - 2단계에서는 지자체 BRM 분류 체계에 의한 중기능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행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이관적합성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존립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분야특이성을 검토함
  - 이상의 단계별 판단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 여부를 중기능을 대상으로 판단함

단계	판단기준	측정지표	분석 대상
1단계 판단	기능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목적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히 처리하는 기능</li> <li>- 중앙과 지방의 동일한 사무</li> </ul>	단위 사무
↓			
2단계 판단	이관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능</li> <li>- 파급효과가 전국적이 아닌 사무</li> <li>-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의 기존기구로 수행 가능한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li> </ul>	중기능
	분야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효율성 이외의 특행별 존립가치에 해당되는 기능</li> <li>-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li> </ul>	
↓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여부의 최종 판단			

- 이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 도출된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별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음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중기능)	정비 방안		
		유지	이관	
			일부	전부
대전충남중소기업청	기업지원		○	
	자금지원			○
	통상지원			○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천안기준)	고용정책			○
	노동정책		○	
	근로자복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기능	○		
	조정기능	○		
	정책기능		○	
대전지방보훈청	보훈 선양			○
	등록 및 보상		○	
	복지 지원			○
	제대군인 지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			○
	하천관리			○
	건설관리			○
대전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		○	
	해양보전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			○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

#### □ 추진전략

- 이와 같은 정비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 인력 및 재원의 동시이양 확보, 기능 단위 지방이양, 정책결정자의 의지라는 전제조건이 요구됨
- 이러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이후 시뮬레이션 검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특행 이양 정책이 지속성과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 있고 효율적인 집행조직 구성, 인근 지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마련, 그리고 지방정부 기능과 국가기능과의 지속적인 연계방안 마련 등의 전략이 필요함

# 차례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4
제3절 연구의 체계 .....	6
<b>제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b> .....	7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9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	9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	11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필요성 .....	13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이론적 근거 .....	13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법적 근거 .....	16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국내외 사례 .....	17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분석 .....	17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례 분석 .....	24
3. 해외사례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혁 사례 .....	37
<b>제3장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분석</b> .....	45
제1절 분석모형 .....	47
1. 분석 대상 .....	47



2. 분석 방법 .....	47
제2절 충청남도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실태 분석 .....	48
1.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반 현황	48
2. 기관별 분석 .....	50
제3절 종합적 분석 .....	124
<b>제4장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 125</b>	
제1절 분석모형 .....	127
1. 분석 대상 .....	127
2. 분석 방법 .....	128
3. 판단 기준 .....	128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정비 방안 .....	134
1. 대전충남중소기업청 .....	134
2.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천안 기준) .....	140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143
4. 대전지방보훈청 .....	145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148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153
7. 금강유역환경청 .....	157
8. 기능별 정비 방안 종합 .....	160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전략	161
1. 전제 조건 .....	161





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단계별 추진 전략 ..... 163

제5장 결론 ..... 165

    제1절 연구의 요약 ..... 167

    제2절 정책적 함의 ..... 171

[참고문헌] ..... 172

# 표 차 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차이	10
<표 2-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정비 논거	11
<표 2-3>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법적근거	12
<표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	16
<표 2-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변화 추이	17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18
<표 2-7> 이명박 정부 특별지방행정 관련 법령 개정 현황	20
<표 2-8>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	22
<표 2-9>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23
<표 2-10>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계획 및 결과	24
<표 2-11> 제 1차 권한이양 및 도조례 위임 사무목록	25
<표 2-12> 특별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구분	25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현황	26
<표 2-14> 이체 정원 확정 현황	30
<표 2-15> 이체 정원 대비 전입 현원 현황	30
<표 2-16> 이관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 현황	31
<표 2-17>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대한 국무총리실 5년 종합평가 내역	36
<표 2-18> 토이펠 개혁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실태	40
<표 3-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47
<표 3-2> 충남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48
<표 3-3> 대전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49
<표 3-4> 제주 기이양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50





<표 3-5>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인력 및 예산	51
<표 3-6>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52
<표 3-7>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56
<표 3-8> 천안고용노동지청 인력 및 예산	62
<표 3-9>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63
<표 3-10>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66
<표 3-11> 보령고용노동지청 인력 및 예산	70
<표 3-12> 보령고용노동지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70
<표 3-13> 보령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73
<표 3-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인력 및 예산	78
<표 3-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78
<표 3-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82
<표 3-17> 대전지방보훈청 인력 및 예산	84
<표 3-18> 대전지방보훈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84
<표 3-19> 대전지방보훈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87
<표 3-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인력 및 예산	89
<표 3-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90
<표 3-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99
<표 3-2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 및 예산	105
<표 3-2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106
<표 3-2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109
<표 3-26> 금강유역환경청 인력 및 예산	114



<표 4-2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정비 방안	157
<표 4-23>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157
<표 4-24>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159
<표 4-25>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정비 방안	160
<표 4-26> 충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별 정비 방안 요약	160
<표 4-27> 역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평가에서의 개선 과제	162
<표 4-28>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기조 비교	163
<표 4-29> 지방이양 단계별 추진 전략	164
<표 5-1> 충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별 정비 방안 요약	169

#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1-1> 연구의 체계 .....	6
<그림 2-1>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 .....	22
<그림 2-2>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	23
<그림 2-3> 토이펠 개혁이전 행정체제의 기본구조와 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 .....	39
<그림 3-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석 모형 ..	48
<그림 3-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조직도 .....	51
<그림 3-3>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	56
<그림 3-4>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직도 .....	62
<그림 3-5>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	66
<그림 3-6> 보령고용노동지청 조직도 .....	69
<그림 3-7>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	73
<그림 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직도 .....	77
<그림 3-9>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	82
<그림 3-10> 대전지방보훈청 조직 구성 .....	83
<그림 3-11> 충남도청 보건복지국·경제산업실 조직도 ..	86
<그림 3-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직도 .....	89
<그림 3-13> 충남도청 건설교통국·환경복지국 조직도 ..	98
<그림 3-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 .....	105
<그림 3-15>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조직도 .....	108
<그림 3-16> 금강유역환경청 조직 .....	113
<그림 3-17> 충남도청 환경복지국 조직도 .....	116
<그림 4-1> 분석 방법 .....	128
<그림 4-2> 판단기준의 적용방법 .....	132
<그림 4-3> 본 연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판단기준 .....	133





<그림 5-1> 연구의 체계 ..... 168  
<그림 5-2> 본 연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판단기준 .....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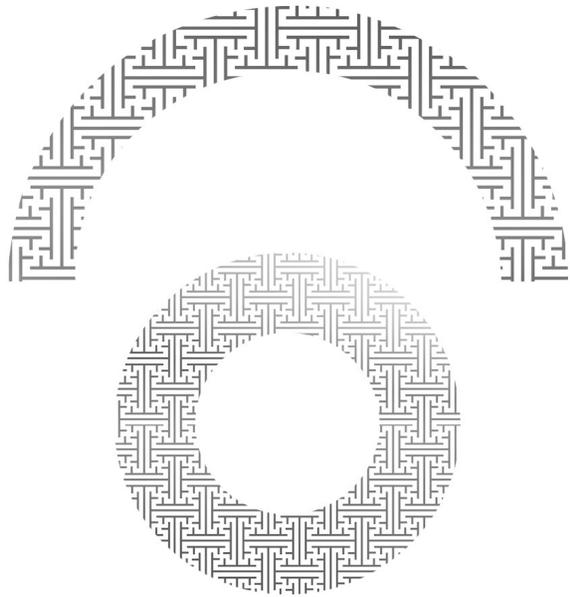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지방에서 체감하는 지방이양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지역 실정에 부합한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필요함
-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수 차례의 건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반발, 추진력의 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2008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분권추진에관한특별법」, 2014년에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대정부 정책건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기존의 특별행정기관 연구사례 및 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충남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특행기관 분석을 통해 지방이양 사무를 기능별로 발굴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 대상 범위

-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지방이양 대상 7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임
- 충남에서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천안지청·보령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대상이 됨

#### ○ 내용 범위

- 본 연구는 우선, 조직, 인력, 예산, 기능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태와 지방이양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
- 다음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기준을 이론적·실무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상 기능 또는 사무를 발굴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전략을 제시할 것임

#### ○ 시간 범위

- 본 연구의 분석 시점, 즉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한 실태분석의 기준 시점은 2016년이나, 제도 개선 실행을 위한 목표시점은 2017년 이후로 설정하고자 함

### 2. 연구의 방법

#### ○ 문헌 조사

- 특별행정기관의 의의 및 설치 근거 등에 관한 기존 논의를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함

○ 사례 조사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광범위하게 이관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각 기능 및 사무 이관의 타당성 파악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함

○ 면담 조사

- 충남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이관 기능 도출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함
- 면담 조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관장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이관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수요도 파악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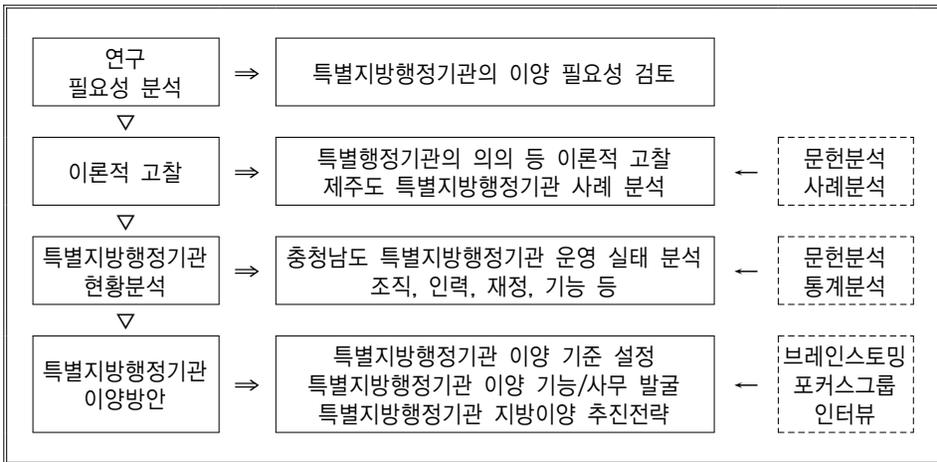
○ 포커스그룹 인터뷰

- 이상의 방법으로 도출된 기능 이관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분석대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 제3절 연구의 체계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체계는 아래 <그림 1-1>과 같으며, 연구 내용의 논리적 구성에 따라 연구 분야별 적절한 연구방법을 활용함

<그림 1-1> 연구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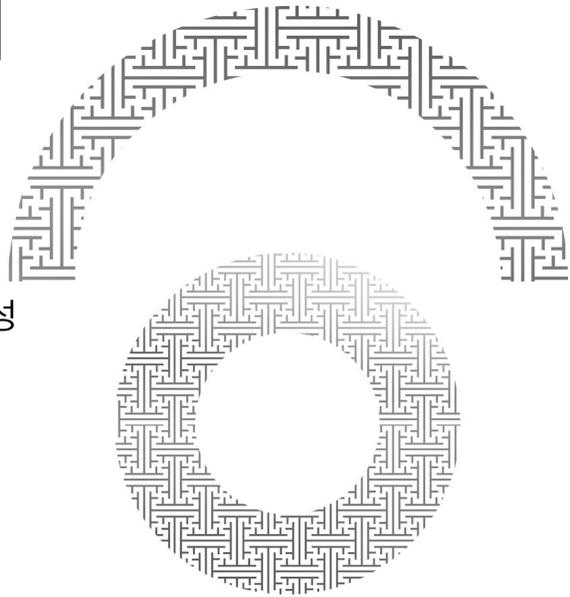


# 제2장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필요성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국내외 사례





## 제2장

##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함(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
  -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음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금창호, 2004; 2012)
  - 법적 지위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조 1항으로써, 해당 규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법인으로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지 아니하므로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국가 행정수행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지역에 설치한 국가의 예속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함
  - 기관구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치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이 존재하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

양정부의 사무를 지역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부행정기관으로써 오직 이에 상응하는 집행기관만이 존재하게 됨

- 기관장 충원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과 처리가 원칙이므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국가사무를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기관장이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 중앙부처가 임명하는 것이 보편적임
-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현실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체재원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재원의 경우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 중앙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우열관계를 가지지 않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직접적인 대리인(field agent)으로서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된 주체라고 할 수 있음

<표 2-1>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차이

측면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적 지위	공법인	하부행정기관
기관 구성	의결기관+집행기관	집행기관
기관장 충원방식	주민선거	중앙정부의 임명
재원 조달	자체재원+중앙재원	중앙재원
중앙정부와의 관계	독립적	예속적

자료: 금창호(2012), p.15

##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 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이론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기능적 분권화를 통한 장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음
  -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균일한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통해 특정 행정서비스의 적정규모 제공이 가능함
  -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높아짐
-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논거에 대한 반박 논거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들 상반된 주장을 정리한 바는 다음과 같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기능적 분권화와 전국적 통일성을 실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약화되고 분권화에 역행된다는 반박이 있음
  -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광역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지방자치 법적 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한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가외성과 실질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간 또는 지방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비효율성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있음

<표 2-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정비 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vs.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논거
기능적 분권화 실현	지방행정의 민주성 약화
전국적 통일성 요구	분권화 역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vs.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논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논거
행정의 전문성	지방자치 법적 체계 위반
광역행정 실현	지방행정의 종합성 저해
가외성과 실질적 효율성 증진	중앙-지방 간·지방 간 갈등 야기
지자체 수용태세의 한계	사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야기

자료: 권영주(201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찬성 vs 반대', 이승중 편저, 「지방자치의 쟁점」, 박영사.

#### 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법적 근거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있음
  -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 제1항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고 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법률적 근거가 됨

<표 2-3>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의 법적근거

법령	내용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법령	내용
<p>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p>	<p>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p> <p>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lt;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gt;</p> <p>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lt;개정 2005.3.24.&gt;</p>

##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필요성

###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이론적 근거<sup>1)</sup>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전체 국가사무의 배분에서 구조적·운영적 측면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중복성, 중앙정부의 집권성 및 의

1) 금창호(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pp. 18-22.

사결정의 비민주성 등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운영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상호간 갈등 유발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성 상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 가. 구조적 측면

### 1) 기능 중복성

- 특별지방행기관의 설치논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전문적 사무나 관할구역의 상이성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도 및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해당분야의 규제나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사무와 차별성이 거의 없음
- 이처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장사무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사무와 중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전체 국가사무의 효율적 배분 및 처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2) 중앙정부의 집권화 경향

- 기본적으로 특별지방행기관의 설치는 구조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능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적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보다는 중앙정부의 감독에 의존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집권화 경향을 보이게 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가 요청됨

### 3)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 특별지방행기관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설치되고, 그 운영은 행정 관료에 의해서,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주무부처에서 지기 때문에, 의

- 사결정에 있어 주민과 이익집단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증설에 비례하여 지방행정의 의사결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배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비가 요청됨

## 나. 운영적 측면

### 1) 기능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 특별지방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분야의 유사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므로 인하여 지휘체계의 이원화, 인력 및 재원의 중복투자, 민원인의 불편,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기능 중복성에 의한 국가 전체의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사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유발

- 특별지방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양 기관 간 설치의 근거나 권한관계가 상이할뿐더러 자기 기관 위주의 업적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는 ‘사무 처리의 원활화’라는 기능적 측면보다는 ‘주무부처의 지시·감독에 따라야한다’는 권한관계의 측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설치근거와 권한관계의 상이성에 근거한 양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정비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3)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성 상실

-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은 완전성과 종합성을 확보하

- 기 어려워 연관 업무 상호 간의 유기적인 행정수행이 곤란하게 됨
- 따라서 행정업무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단절현상을 초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필요함

##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법적 근거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법적 근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마련되어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서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능 및 사무 정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2-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법적근거

법령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및 국내외 사례

####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분석

##### 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

- 우리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952년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양하기 보다 직접 추진하는 것이 인력 및 예산 증액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금창호 외, 1996)
- 따라서 지속적인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1961년과 1981년 등 몇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옴
-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후반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연도별 증가 추이의 변화는 크지 않음

<표 2-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4년	2015년
총계	7,004	3,668	5,115	5,145	5,227	5150
노동행정기관	46	46	47	47	47	47
세무행정기관	174	177	183	183	188	193
공안행정기관	3,920	1,620	2,548	2,572	2,625	2,641
현업행정기관	2,502	1,432	1,995	1,995	2,009	1,967
기타행정기관	362	393	342	348	358	302

- 201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을 1차 기관과 2·3차 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150개 가운데 1차 기관이 248개이고 2·3차 기관이 4,902개로 나타남

<표 2-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유형별	부처별	기관명	
		1차 (248개)	2·3차 (4,902개)
고용노동 행정기관(47)	고용노동부(47)	지방고용노동청(6)	지방고용노동지청/출장소 (41)
세무행정기관 (193)	국세청(141)	지방국세청(6)	세무서(117), 세무지서(18)
	관세청(52)	세관(47)	세관감시소(5)
공안행정기관 (2,641)	법무부(186)	지방교정청(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11), 보호관찰소/지소(18), 외국인보호소(2), 위치추적관제센터(2), 출입국관리사무소(19),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1)	교도소/교정청/지소(101),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17), 출입국관리출장소(23)
	검찰청(63)	고등검찰청(5)	지방검찰청(18), 지청(40)
	경찰청(2,233)	지방경찰청(16)	경찰서(251), 지구대/파출소(1,966)
	국민안전처(130)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5)	해양경비안전서(17), 항만교통관제센터(15), 연안교통관제센터(3), 해양경비안전센터(90)
	국토교통부(29)	철도특별사법경찰대(1)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센터(27)
현업행정기관 (1,967)	미래창조과학부 (1,967)	-	지방우정청(9), 우체국(1,932), 우편집중국(24), 우편물류센터(2)
기타행정기관 (302)	공정위(5)	지방사무소(5)	-
	국가보훈처(24)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조달청(11)	지방조달청(11)	
	통계청(39)	지방통계청(5)	사무소(34)
	병무청(14)	지방병무청(11)	지방병무지청(3)

유형별	부처별	기관명	
		1차 (248개)	2·3차 (4,902개)
	기상청(24)	지방기상청(6), 항공기상청(1)	기상대(10), 공항기상대(5), 공항기상실(2)
	산림청(32)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산업통상자원부 (4)	광산보안사무소(4)	-
	중소기업청(14)	지방중소기업청(11)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3)
	보건복지부(23)	-	국립검역소(13), 검역소지소(10)
	식품의약품 안전처 (2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	수입식품검사소(15)
	환경부(9)	지방(유역)환경청(8)	출장소(1)
	국토교통부 (53)	지방국토관리청(5), 지방항공청(3),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1), 홍수통제소(4)	국토관리사무소(18),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9), 항공관리사무소(1), 비행점검센터(1), 지방공항출장소(1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센터(28)
	해양수산부 (25)	지방해양수산청(11)	해양수산사무소(9), 해양사무소 출장소(3), 건설사무소(1), 진도항로표지사무소(1)
	공정거래 위원회(5)	지방공정거래사무소(5)	-
	원자력안전 위원회(4)	지역사무소(4)	-

자료: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

## 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현황

###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실적

- 김대중정부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 및 추진 하였으나 가시적은 성과는 없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7 개 기관을 이양하였고, 이명박정부에서는 3개 기관을 위임기관<sup>2)</sup>하였음

- 이명박정부는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집행적 기능을 위임이관 하였으며, 3개 분야 208명의 인력을 이관하였고, 2009년 12월에 직제개정, 2010년 4월에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음

<표 2-7> 이명박 정부 특별지방행정 관련 법령 개정 현황

구분	법률	현황	시행령	현황	
국도하천	도로	도로법	개정완료	도로법시행령	개정완료
	하천	-	-	하천법시행령	"
해양항만	항만 개발 관리	항만법	개정완료	항만법시행령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완료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
		도선법	개정완료	도선법시행령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특별법	개정완료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
	해양 환경	-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완료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연안관리법	개정완료	연안관리법시행령	"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	-	해양생태계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
		개항질서법	개정완료	개항질서법시행령	"
식의약품	식품	-	-	식품위생법시행령	"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완료	건강기능식품법시행령	"
	의약품등	의료기기법	개정완료	의료기기법시행령	"
		-	-	화장품법시행령	"
재원이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완료	-	-	

자료: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시스템

- 2) 정비는 정책적 용어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 기구조정 및 행정효율성 확보 등 전반적인 개편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이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장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의 관장기능으로 넘겨주는 것이며, 이관의 구체적 방법에 해당하는 위임은 해당사무의 법적 지위는 국가 사무로 두되 처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며, 이양은 법적 지위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금창호, 2012)

## 2)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 (1)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의결 현황

#### ○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특행기관 사무 중 지자체 수행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수행

#### ○ 추진방안

- 기본방향  
: 지방중복 사무, 현지성이 강한 사무, 집행적 사무들은 지방이양  
: 기존위원회가 의결한 243개 사무 중 89개 사무 우선 이양 추진  
: 추가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2단계 지방이양 사무 발굴  
: 지방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일괄 법제화 추진

#### ○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89개 사무)

- 단순 집행적인 지도·점검 사무(9개 사무) \*환경분야  
: 축산폐수 규제 및 정수장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실태조사 등
- 일자리 창출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13개 사무) \*고용노동분야  
: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사업 및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41개 사무) \*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장설립 지원 등
- 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사무(25개 사무) \*식의약품분야  
: 식중독 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입식품 사후관리 등
-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 지자체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1개 사무) \*국토하천분야

#### ○ 추가정비 사무 발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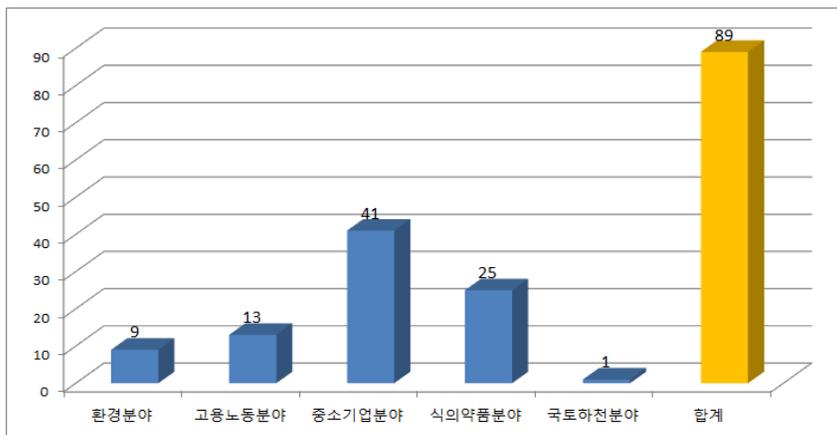
- 해양항만분야 등에 대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추진

<표 2-8>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

분야	기준	사무 내용	사무 수
환경분야	단순 집행적인 지도·점검 사무	축산폐수 규제 및 정수장 지도점검, 환경기초시설 실태조사 등	9
고용노동분야	일자리 창출 등 현시성이 강한 사무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사업 및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13
중소기업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공장설립 지원 등	41
식의약품분야	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사무	식중독 예방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입식품 사후관리 등	25
국토하천분야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 지자체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		1

자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2-1> 기존 위원회가 의결한 사무 중 지방이양대상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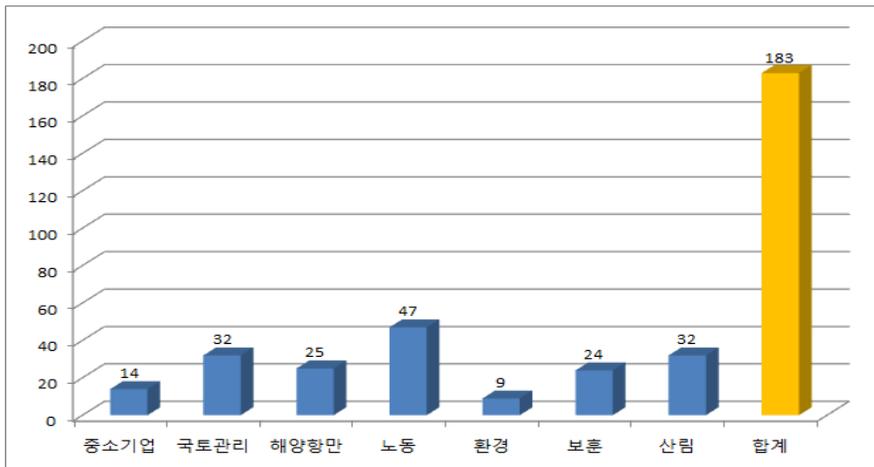
(2)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한편, 중소기업분야, 국토하천분야, 해양항만분야, 노동분야, 보훈분야, 산림 분야 등 7대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lt;표 2-9&gt;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

분야	기관수	1차 기관명(수)	2·3차 기관명(수)
합계	183	51	132
중소기업	14	지방중소기업청(11)	사무소(3)
국토관리	32	지방국토관리청(5)	국토관리사무소(18)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9)
해양항만	25	지방해양항만청(11)	해양사무소(9) 해양사무소 출장소(5)
노동	47	지방고용노동청(6)	지방고용노동지청, 출장소(41)
환경	9	지방유역환경청, 대기환경청(8)	출장소(1)
보훈	24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산림	32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lt;그림 2-2&gt;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



## 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례 분석

###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현황

#### 1) 개요

- 제주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된 것으로 당초계획에는 완전이관 6개 기관과 지도·감독권한 이관 2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7개 기관의 완전이관으로 변경되었음

<표 2-10>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계획 및 결과

구분	내용
당초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이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li> </ul> </li> <li>■ 지도·감독권한 이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세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li> </ul> </li> </ul>
최종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이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지청</li> </ul> </li> </ul>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이관되거나 위임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래 1062개 이관된 권한 중(아래 <표 2-11>)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49개 분야 458건을 이양 받음(아래 <표 2-12>)

&lt;표 2-11&gt; 제 1차 권한이양 및 도조례 위임 사무목록(총괄)

구분	계	자치분권 분야	개발재정 분야
합계	1062 (180)	555 (59)	461 (121)
권한이양	688 (46)	469 (8)	219 (38)
도조례위임	374 (134)	94 (51)	280 (83)

자료 : 양영철, 2007c, p. 203; 양영철 외(2008), p.185에서 재인용

&lt;표 2-12&gt; 특별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구분

특별법 조항	이관 사무(건)	비고
제142조(국토관리사무 특례)	8개 분야 92건	※ 제외사무(특별법 제141조) - 중소기업청 :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 해양청 : 해상 안전에 관한 사항 -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 - 노동지청 :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제143조(중소기업사무 특례)	4개 분야 8건	
제144조(해양수산사무 특례)	13개 분야 131건	
제145조(보훈사무 특례)	8개 분야 122건	
제146조(환경사무 특례)	4개 분야 4건	
제147조(노동사무 특례)	11개 분야 97건	
제148조(노동위원회 특례)	1개 분야 4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양영철 외(2008), p.200에서 재인용.

-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법」의 공포(법률 제7849호)에 따른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인원은 다음과 같음
  - 이관예정인 7개 기관의 이관 전(前) 정원은 238명이나 이관정원은 140명으로 결정되었고, 이관정원 140명 중 실제적인 이체인원은 126명임

## 2) 기관별 이관 사무

- 「제주특별법」의 공포(법률 제7849호)에 따라 이관된 사무는 다음과 같음
  -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제주도의 면적이 협소하고 도로 및 하천도 단 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부족 등의 건교부 이관 반대 논리가 설득력

- 을 잃어 모든 사무와 직원 일체를 이관함
-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의 경우 시험분석 사무와 제주관광공예품 연구개발사무, 공공구매성능인증 사무, 산업안전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와 사무소 및 직원 대부분을 이관함
  - 제주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당초 정부안은 기술개발사무만 민간 위탁하고 나머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a:167-8)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일부의 극히 일부만 이관됨
  -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참여정부안은 항만 계획만 국가가 수행하고 항만의 건설 및 관리, 어촌지도사무는 지방에 이양(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a:150)하고 어촌관리사무 중 국가조약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원관리, 항만보안사무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기관위임 사무화할 것으로 정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항만보안사무와 선원관리사무뿐만 아니라 개항질서사무, 해상운송사무, 선박등록사무, 하역업, 급수·급유 등 부대사업 등도 이관하지 않음

<표 2-1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현황

기 관 명	기존정원(명)	예 산 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제주도 조직 (‘15년 현재)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합 계	238	758	-	-	-
	140				
	126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	334	국토관리사무 8개분야 92건 - 국도 건설 및 유지관 리, 국가하천 건설 및 유지관리 전부 이 관됨 - 국도유지사무소(출 장소포함) 이관 - 도시건설본부 도로 관리단을 설치하여 이관	-	도로관리 사업소 건설과
	49				

기 관 명	기존정원(명)	예 산 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제주도 조직 (‘15년 현재)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장은 원래 제주도 공무원이 맡고 있음</li> <li>- 이관된 국가공무원 은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됨</li> </ul>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	3	노동위원회사무 1개분야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권리 분쟁 조정 및 판정 업무</li> </ul>	-	지방 노동위원회
	9				
	9				
제주 환경출장소	8	-	환경사무 4개분야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도 전역 농공단지 폐수·하수 종말처리 시설 및 마을하수도시 설지도 점검 및 방류 수 수질검사 실시</li> <li>-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회신기간을 전문기관 지정고시 하여 환경부장관 의견 수렴 생략, 처리 기간 30일에서 10일로 단축</li> </ul>	국가측정망 (대기,토양,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간이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는 그 권한이 환경부에 존치됨</li> </ul>	생활환경과
	2				
	8				
제주 보훈지청	23	4	보훈사무 8개분야 12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단체들과의 지속적 간담회 등 민원 불편 최소화 노력을 통하여 보훈업무 조기 정착 추진</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2006.12)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 중</li> </ul>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 제 141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결정에 관한 사항 이관제외</li> </ul>	보훈청
	23				
	21				

기 관 명	기존정원(명)	예 산 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제주도 조직 (‘15년 현재)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400	해양수산사무 13개분야 131건 - 항만·어항 관리 개 발, 수산관리 등 13 개 분야 131개 사무 이관 - 해양수산 본부(1국 3 과) 설치로 자치도 실정에 부합한 항만 개발·관리 등 추진 - 도 공무원이 본부장, 이관된 국가공무원 은 전원 지방공무원 으로 전직 - 공유수면관리에 관 한 조례 등 6건 제정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내 어업지도과를 신 설하여 이관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 특별법 제 141조에 의해 해상안전에 관 한 사항 이관 제외 - 항만보안 업무, 개항 질서 업무, 해상운송 사업, 선박등록 업 무, 하역업, 급수·급 유 등 부대사업, 선 원관리 등 미이관	수산정책과 해운항만과
	35				
	36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17	4	중소기업사무 4개분야 8건 - 중소기업청 사무와 도자체 중소기업 지 원업무 일원화 - 기존 제주지방청사 에 있는 기업지원과 는 도 본청으로 이전 완료 - 지방중소기업청 업 무(시험·분석 업무 제외)와 기존 도 수 행기업 지원 업무(국 내 판매, 기업지원) 중 중복사무 등을 통 합하여 ‘기업지원과’ 편제, 도청으로 이관 - 기술개발 및 기술지 도 지방 이양	시험·분석사무 (고도의 전문기술 및 전국 통일성) - 특별법 제 141조에 의해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이관 제외 - 시험분석 ◆ 시험분석사무 ◆ 제주관광공예품 연 구개발 사무 ◆ 공공구매 성능인증 사무 ◆ 산업안전관련 사무 ※ 광주·전남 지방중소 기업청 신하 제주시험 연구센터에서 담당	기업지원과
	12				
	11				

기관명	기존정원(명)	예산 이체액 (억원)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제주도 조직 (‘15년 현재)
	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광주지방 노동청 제주지청	33	13	고용사무 11개분야 97건 - 종합고용지원센터 설치 이후 고용 안정 사무(55건) 완전이관 추진중 -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노동위원회 명 칭 및 위치에 관한 조례 제정	-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련 기능 ◆ 직업지도(대학생 직업지도) ◆ 청년실업대책(청년 층 직장체험 프로 그램) ◆ 외국인 고용 허가 ◆ 탈북주민 지원사업 ◆ 직업능력개발 지도 점검 등 8개 법령 44 개 조항 관련 사무 - 노사지원 관련 사무 - 근로감독사무 (ILO 국제협약) - 산업안전 관련 사무 ※ 제주지역의 노사 지원 근로감독, 산업 안 전 업무는 광주지방 노동청 소속 근로감 독3과(제주도 소재) 에서 담당하고 있음	고용센터
	10				
	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양영철 외(2008), pp.182~183에서 재인용.

### 3) 이관 정원 및 예산

-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된 정원은 14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체 정원 대비 전입 현원은 125명(4급 1·6급 8·기능 1의 과원과 5급 2·7급 8·8급 13·9급 2)으로 확정됨
  - 국토청, 보훈청, 노동위만이 100% 인원을 이관하였고, 중기청이 71%, 해수청은 35%, 환경출장소 25%, 노동청이 30%를 이관하였음
  - 직급별 이체 현황에서는 고위직은 부처 내의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부분 이체되었지만 6급 이하 하위직의 이체율은 현저히 낮음
  - 이관 기관 내 비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현근무 부서 내 임용 배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인력에 대하여 정원을 고정하여 승계 대상 인력을 관리하여 총 93명 중 50명이 승계되었고 중기청 시험 분석 사무 보조, 해수청 청경 및 계약직, 환경소 야생조수 조사원 등 43명이 제외되었고 이 중 해수청이 3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2-14> 이체 정원 확정 현황

기관별	계	국토청	중기청	해수청	보훈청	환경소	노동청	노동위
정원(명)	238	49	17	99	23	8	33	9
이체(명)	140	49	12	35	23	2	10	9
잔류(명)	98	0	5 (시험)	64 (해상안전)	0	6 (기관지원)	23 (근로감독)	0
이체율(%)	59	100	71	35	100	25	30	1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양영철 외(2008), p.187에서 재인용.

<표 2-15> 이체 정원 대비 전입 현원 현황

기관별	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이체정원(명)	140	1	3	11	28	26	15	8	48
전입정원(명)	125	1	4	9	36	18	2	6	4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양영철 외(2008), p.187에서 재인용.

- 제주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후속조치로서 2006년 이체 예산을 산정하여 2007년 이후 기존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함
  - 하기의 표와 같이 이관대상 7개 기관의 총 예산은 2006년 기준 1,422억원 중 이관된 예산은 53%인 758억원

&lt;표 2-16&gt; 이관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 현황(2006년 당초예산)

(단위 : 백만원)

	합계	국토청	중기청	해수청	보훈청	환경소	노동청	노동위
당초예산	142,229	51,211	1,174	82,258	2,867	313	3,882	524
이관예산	75,813	33,398	417	40,030	434	44	1,227	263
이관율(%)	53	65	36	49	15	14	32	5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정리.; 양영철 외(2008), p.188에서 재인용.

주: 이체예산 산정 기준은 2006년도 총 예산 중 미집행된 하반기 예산임

## 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성과

### 1) 종합적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5주년 성과 연구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도와 유사·중복되는 사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 만족도를 높여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주자치도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제고
  - 특별행정기관 소관 예산을 제주자치도 예산의 전체적인 틀에서 계상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 만족을 실현
  - 국가기관이라는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민원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읍·면·동 등 하부기관을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자치도 이관으로 향후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토록 함
- 반면, 중앙부처와의 단절 및 지방재정 부담의 해결이 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되었음
  - 중앙부처의 신규 국가사업에서 제주가 제외되거나 사업시행시기가 늦어지

면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예1)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 고용노동부가 2009년 전국에 시행중인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경우 제주에서는 1년~2년 늦은 2010년,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2012년부터 일시적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제도는 제외,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예2)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국토해양부의 2011~2015년 국토건설계획에서 제주가 배제, 신규 사업비 1조8000억원을 받지 못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됨

## 2) 기관별 성과<sup>3)</sup>

###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 매년 광특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순증되고 있어 건설 및 유지보수 국비예산 확보문제 없음<sup>4)</sup>
- 유지보수비가 줄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광특예산 신청 시 도에서 자체 조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도 문제 없음
- 국가와 교류를 통한 도로 신기술 도입, 전국 국토관리망에 대한 접근성 문제 발생
- 그러나,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현지실정 반영을 통한 지방도와 국도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

### ○ 제주지방중소기업청

- 사업 단계부터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이관 당해연도 중소기업지원시책 24개 사업에서 2010년 4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이관예산인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이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행정기관\_이관(5년평가)

4)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향후 타 지역 국도예산 감소 전망

- 중소기업청 지원업무가 제주자치도 기업지원과(금, 판로, 기술, 소상공인 지원 업무), 경제정책과(재래시장/상점가 지원, 수출지원 업무), 향토자원산업과(벤처기업 지원 업무 등) 등 3개 과로 분산되면서 전담부서로의 통합이 필요함
- 중소기업청과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담당부서(기업지원과)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신규사업에 제주자치도가 배제되거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추진하는 문제 발생함
- 중소기업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방중소기업청 당시보다 직원들의 경험이 부족한 실정임
- 시험검사 기능의 이관에 대해서는 예산 및 전문성 면에서 부정적임

#### ○ 제주지방해양수산청

- 전국 항만 및 국가어항 예산과 비교해 보면 항만(국가어항 포함)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2004~2010년에는 전국 0.03% 상승한데 비해 제주에서는 0.37% 상승하였고 2006~2010년에는 전국 0.97% 상승한 것에 비해 제주 9.83% 상승하는 등 국비가 꾸준히 지원되고 있음
- 국가에서 14개 무역항을 제외한 무역·연안항 항만개발 및 관리사무에 대해 지방위임(2009.12.31.)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사무는 항만보안, 항만관제, 해운업무, 선박등록 등임
- 또한, 항만은 도로와 달리 항만기본계획 수립권한과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중앙부처와의 인적교류를 통해 중앙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특성을 살린 항만개발계획의 수립,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적극적인 개선,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증대, 항만하역요금 4년간(2008~2011) 동결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입(2006.7~11.) : 75억원)
- 다만, 항만관리 이원화 문제, 담당직원의 전문성, 대규모 항만개발사업비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음 → 신규 SOC사업 추진 시 광특예산 실링 조정 또는 일반국고 예산 편성 등 안정적 확보대책을 추진함

○ 제주보훈지청

- 제1지방분권촉진 실무위에서 국가보훈처 사무의 지방이양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효율성·전문성 등으로 국가보훈처가 일괄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국가보훈처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함 (2010.7.29.)
- 국가를 위해 희생 했으므로 국가에서 담당해야 예우의 격이 맞다는 의견이 있으나, 직원의 전문성이 약화되어 불만이 발생하고 있음
- 보훈사무 이관 결과로 단기간 내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지나, 그렇다고 국가로 환원할 만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두고 국가의 분권추진동향의 변화와 고객의 만족도 방안을 검토함
- 보훈청 소관 광특회계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편성하고 집행은 시스템(D-Brain)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환경출장소

- 영산강유역청에서 처리하던 사전환경성 검토(민간부문)를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민간개발사업자를 통해 시간·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냄으로써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음
- 환경출장소가 담당했던 상하수도·수질 및 폐기물분야 지도점검을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게 연 1~4회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신속한 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킴
- 환경부 산하 전국 각지에 있던 9개 환경출장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되어, 업무는 4대강유역청과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 ○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 종합고용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 일자리 정책과 중앙정부 고용전략간 융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도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 고용문제 해결에 제주자치도가 의지를 가지고 행·재정 지원을 한다면 고용노동부로 환원하는 것보다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직제를 독립사업소 형태로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유능한 책임자급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음

##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되어 노동사건을 심판·조정하는데, 본래 유사·중복사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도 않음
- 업무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하나, 제주자치도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위원장 임명, 위원 위촉, 조사관 등 지휘·감독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제주자치도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쟁의 조정에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2006년 7월 이후 제주자치도가 관련된 차별시정 및 구제신청 사건(초심 15건(인정 2, 기각 9건, 취하 4) → 재심 9건(초심유지 7건, 초심취소 2건) 등)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노동현장을 두루 거친 노동분야 전문가의 부족으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조사관으로 배치하여 전문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한 해법이 없음(노·사·공익위원은 비상임으로 조사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일반 행정직원이 조사관으로 발령 시 전문성 부족으로 2개월간은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공정성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기관화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의 교류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17>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대한 국무총리실 5년 종합평가 내역

특행기관	성과 내용
제주지방국토관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관리 체계 일원화</li> <li>▸ 도로 표시체계 및 도로시설 정비의 지역적 특성 반영</li> </ul> </li> <li>■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선행정 서비스체계의 개선</li> <li>▸ 도로신설 및 (구)국도 유지관리 재정보호</li> </ul> </li> </ul>
제주지방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청과 제주자치도의 중복사무 통합</li> <li>▸ 기업지원에서 다른 지역과 다른 제주자치도 기업들의 특성 반영</li> </ul> </li> <li>■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감소 등 상대적 소외감 극복</li> <li>▸ 중앙정부와 협력 및 연계 강화</li> <li>▸ 부서별 분산업무 통합 필요</li> </ul> </li> </ul>
제주지방해양수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사정을 반영한 항만시설의 운영</li> <li>▸ 중앙정부와 인사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제주도 의견을 국가 계획에 반영</li> </ul> </li> <li>■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항만시설 확충의 안정적 예산확보</li> </ul> </li> </ul>
제주보훈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자치도 차원의 관심 확대</li> </ul> </li> <li>■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확보 및 전문인력 확충</li> <li>▸ 보훈사무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성 확보</li> </ul> </li> </ul>
제주환경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자치도 내 처리로 업무시간 단축 및 주민 편의성 증대</li> <li>▸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환경평가기준의 사용</li> </ul> </li> <li>■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및 공공개발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이관</li> <li>▸ 인력 및 재정지원 확대</li> </ul> </li> </ul>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관을 통한 예산통합 효과로 다양한 고용지원프로그램의 계획 및 집행</li> <li>▸ 제주자치도의 지역사정을 반영한 행사의 개최</li> </ul> </li> </ul>

특행기관	성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과제</li> <li>· 중앙정부와 연계 강화</li> <li>· 직원 전문성 강화</li> </ul>
제주지방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성과</li> <li>·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li> <li>■ 개선과제</li> <li>· 업무 전문성 확보</li> <li>· 노동문제 심사 공정성 확보(도청 간섭)</li> </ul>

### 3. 해외사례분석: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혁 사례

#### 가. 독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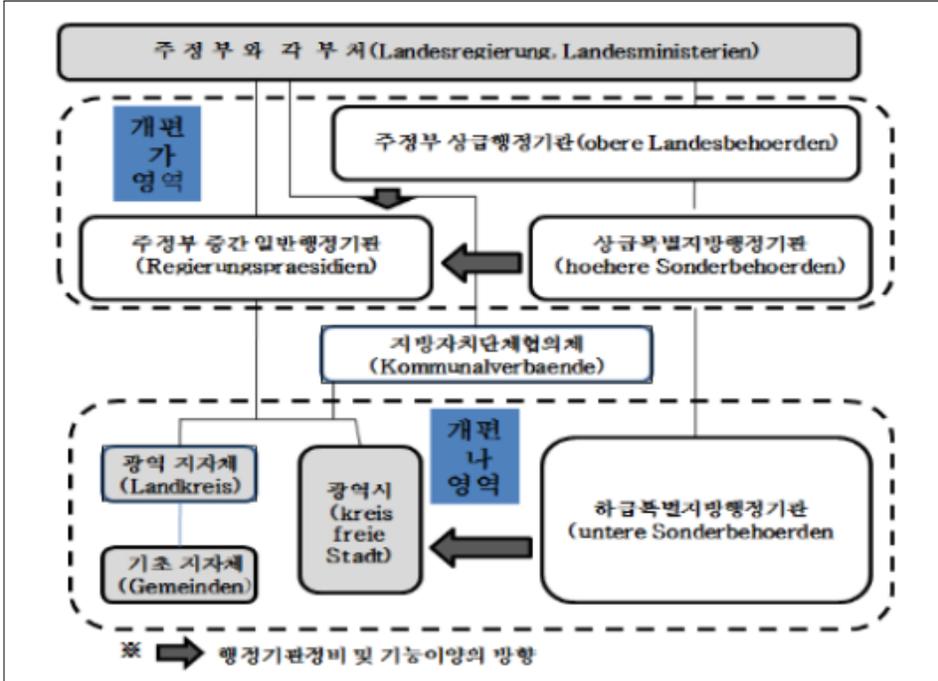
##### 1) 2005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 개혁 사례<sup>5)</sup>

- 2005년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행정체제개편은 일반·특별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방만한 행정체제를 일원화·단순화·간소화하여 주정부의 정치·행정적 통치·지휘능력 회복 및 예산절감에 일차적 목적을 둬
  -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을 통한 지방자치화 및 정치행정시스템의 민주화에 개혁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2009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역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행정체제개편과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일반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을 주된 정책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유사함
- 2005년 대규모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으로 주정부 특별행정기관들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정비하여 일반행정기관으로의 이관(이하 토이펠 개혁)하는 개혁을 단행함

5) 정원식, 안권욱. (2009), 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9권 제3호: 25~52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부 사례 1970년대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는 850여 개소에 달했으나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1994년에는 570여 개소 그리고 2001년에는 470여 개소로 감소함(Jaud 2007: 3)
  - 2005년 토이펠 개혁으로 450개의 주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들 중 350개 기관의 기능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 중간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함
- 2005년 토이펠 개혁을 통하여(독일의) 주정부 행정체제는 일반행정기관으로 일원화됨
- 2005년 이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특별행정기관은 3개의 수직적 계층체제로 모두 약 450개 이상의 특행기관이 존재했으나 토이펠 개혁을 통하여 450개의 특별행정기관들 중 약 350여개를 정비함
  - 특별행정기관 정비의 기본원칙은 우선 아래에서와 같이 <가>영역의 특별행정기관들 즉, 주정부 상급행정기관과 상급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은 주정부 중간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나>영역의 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기능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란트크라이스(Land kreis)와 광역시(kreisfreie Stadt)로 이관함

<그림 2-3> 토이펠 개혁이전 행정체제의 기본구조와 행정체제개편의 기본방향



자료: Reiners(2008: 98); 정원식 외(2009), p.38에서 재인용

- 다음의 표는 특히 <나>영역에 해당하는 개혁 요소들로서 주정부 하급특별 지방행정기관들의 기능이 정비되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분야들 중 9개 분야의 기능이 광역지방 자치단체인 35개 란트크라이스(Landkreis)와 9개 크라이스프라이에슈타트(kreisfreieStadt)로 이관됨

<표 2-18> 토이펠 개혁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실태

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대상 기능	기능이관 수용 기관	
	란트크라이스	크라이스프라이에슈타트
급부행정기관의 기능	○	×

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대상 기능	기능이관 수용 기관	
	란트크라이스	크라이스프라이 에슈타트
도로관리관청의 기능들 중 - 지방도로와 관련한 일체의 기능 - 연방 주정부도로의 관리기능	○	○
하천관리의 일부 기능	○	○
산업감독관리 기능들 중 - 기술적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의 노동보호와 관련한 기능	○	○
측량과 관련한 기능	○	×
농업경제와 관련한 기능	○	공공농지
경작지관리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한 사무들 중 하급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속한 기능	○	×
산림관리와 관련한 기능들 중 -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피해의 복원관련 기능	○	×
초등학교, 실업계학교, 직업학교 등에 대한 지휘 감독 기능	○	○

자료: IM Baden-Württemberg Stabstelle für Verwaltungsreform, 2004; Landtag BW 2004, Drs. 13-3382 등을 근간으로 재정리; 정원식 외(2009), p.40에서 수정인용

## 2) 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

- 2005년 토이펠 개혁의 성과는 수평적 기능재배분의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일원화 및 단순화 그리고 일반행정기관의 기능 강화를 들 수 있으며, 수직적 기능재배분의 관점에서는 주정부 행정기능의 축소와 지방행정기관들의 행정기능 확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제시되고 있음
  - 첫째, 시설물유지비용, 인건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었고, 행정업무처리의 경제적 능률성은 향상되었으나 그에 따른 전문성 및 업무처리의 질에 대한 과제가 발생함
  - 둘째, 행정업무처리의 종합성과 주민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관계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환경·기술·산업과 관련한 분야의 사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노하우가 약화됨

-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의회는 배제된 형태로 이관되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및 통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나. 일본 사례<sup>6)</sup>

### 1) 일본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으로는 국가행정기관(부, 성, 위원회, 청)의 소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이 있음
  - 「국가행정조직법」 제9조는 “국가행정기관에는 그의 소관 사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지방출장기관 내지 지방파견기관’ 혹은 ‘지방분국’이라 칭함
  - 「내각부설치법」 제6관에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지분부국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제1목 제43조에서 본부에 오키나와 종합사무국을 두며, 전항에 정한 것 외에 본부에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소관사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을 두는 것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은 국가행정기관의 지방조직으로 전국 각 블록(관동, 관서 등)마다 局으로 설치, 하부조직으로 도도부현마다 지국이나 사무소를 두고 있음
  - 법령상 지방지분부국은 그 부·성·위원회·청의 직하에 설치된 것이며, 특정 내부 부국의 하부기관은 아님
  - 예를 들어, 오키나와종합사무국은 내각부 전체의 지방부분구국이지, 내각부 오키나와진흥국의 지방지분부국은 아님
- 일본은 19개 국가행정기관(부, 성, 위원회, 청)에 38개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이 설치되어 있음
  - 총무성의 경우 「총무성설치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지분부국은

6) 경기개발연구원 자치경영연구실 이현우 연구위원, 2013.07.23

관구행정평가국, 종합통신국, 오키나와행정평가사무소, 오키나와종합통신 사무소 등이 있음

- 관구행정평가국은 소관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곳에 행정평가국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령으로 정할 수 있음

## 2) 개혁 성과

- 2007년 일본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개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고 지방6단체와 전국지사회는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를 제안함
-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권한을 정비함
  -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후, 불필요한 사무·권한 등은 폐지하고 폐지된 것 외의 업무에 대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을 분류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함
- 둘째, 국가와 도도부현의 이중행정 해소 등을 통하여 행정을 간소화함
  - 도도부현 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블록 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폐지함
  - 다만,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조직(출입국관리국, 세관 등), 전국적인 규모·관점에서 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취급하는 조직(지방항공국의 항공관제부문, 관구기상대), 공공사업에서 전국적 규모·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유지하도록 함
-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에 따른 인원 승계에 협력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 사무·권한 등에 지방이양에 따라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선 조직과 사무의 철저한 합리화를 추진한 후 지방은 필요한 인원의 승계에 관해 협력하도록 함

#### 다. 해외사례 시사점

-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혁 과정에서 지나친 예산절감을 하여 행정업무처리의 경제적 능률성과 전문성 및 업무처리의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체제개편에 있어 지나친 예산절감 목표는 이관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노하우의 문제와 절대적인 인원의 부족으로 행정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질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과 업무처리 시간 증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둘째, 일본과 같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중앙정부 각 부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상황과 매우 상이함
  -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아닌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구,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총괄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지방지부분국은 법률과 정령, 성령을 통해 설치, 조직,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어 해당 행정 부처가 기구 및 조직을 통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총무성의 경우 중앙행정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총무성설치법, 정령인 총무성 조직령, 성령인 총무성 조직규칙을 통해 총무성 소관 지방지부분국의 설치, 조직,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어 총무성이 기구 및 조직을 통제하고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함
  -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구,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 총괄하여 운영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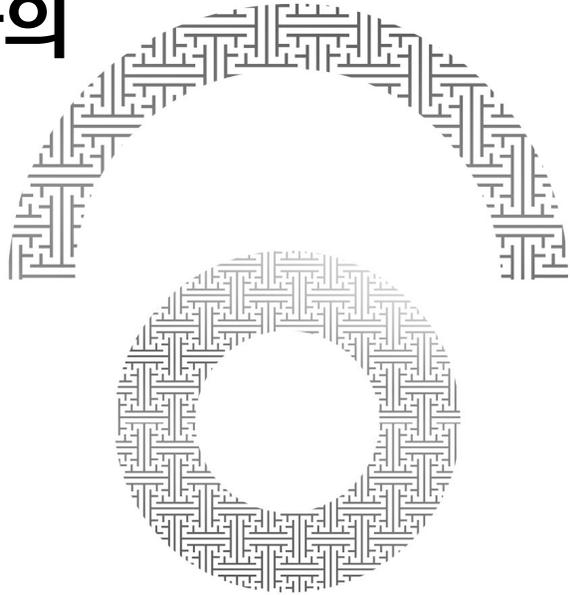


# 제3장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충청남도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실태 분석

제3절 종합적 분석





## 제3장

##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분석

## 제1절 분석모형

## 1. 분석 대상

- 충청남도의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석할 대상은 제주도에  
서 기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들로 우선 선정함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대상임

<표 3-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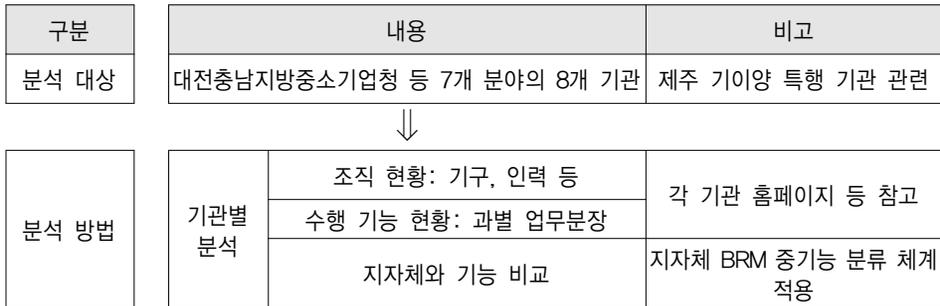
기관명	주요 기능	소재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대전
고용노동부(천안지청)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고용창출, 고용지원	천안시 보령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간 이익, 권리분쟁 해결	대전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지원	대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토건설관리, 국가하천 정비	대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 확충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수질개선 추진	대전

## 2. 분석 방법

- 우선, 충청남도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각각의 현황을 조직 구조  
와 수행 기능별로 살펴보고, 이들 기관의 담당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충남 도청의 조직을 선정하고 각 기능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가장 우선되는 근거가 바로 기능 중복성이므로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의 기능 간 기능의 중복성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그림 3-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석 모형



## 제2절 충청남도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실태 분석

### 1.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반 현황

#### 가. 충남 소재 특행기관

- 충청남도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2> 충남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
충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관리	공주시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량관리, 홍수예보	공주시
대산세관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단속	서산시
고용노동부(천안지청)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고용창출, 고용지원	천안시 보령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 정비	예산군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
보호관찰소(천안지소) 보호관찰소(논산지소) 보호관찰소(공주지소) 보호관찰소(홍성지소) 보호관찰소(서산지소)	보호관찰, 범죄예방	천안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서산시
지방중소기업청(천안사무소)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천안시
지방통계청(천안사무소) 지방통계청(서산사무소) 지방통계청(홍성사무소)	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 확충	서산시

#### 나. 대전 소재 특행기관

- 대전광역시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3> 대전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
대전지방교정청	수용자교정·교화	대전
충청지방우정청	우편사업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수질개선 추진	대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창출, 고용지원	대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 정비	대전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지원	대전
대전지방국세청	국세부과·감면·징수	대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지역병역자원 관리	대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의약품 감시 및 검사	대전
대전지방기상청	기상예보, 기상서비스 제공	대전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범죄예방	대전
대전지방조달청	공공기관물자·시설·용역	대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대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간 이익, 권리분쟁 해결	대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심사, 체류 외국인 관리	대전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개발·기술지원	대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유통거래 불공정행위 감시	대전

### 다. 제주 기이양 관련 특행기관

- 충청남도와 대전에 소재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양이 완료되었거나 이양이 진행 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음
  - 제주지방국도관리청·제주지방중소기업청·제주지방해양수산청·제주환경출장소·제주보훈지청·제주지방노동지청·노동위원회 등 7개 정부 특행기관이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됨

<표 3-4> 제주 기이양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명	주요기능	소재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대전
고용노동부(천안지청)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고용창출, 고용지원	천안시 보령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간 이익, 권리분쟁 해결	대전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지원	대전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 정비	대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 확충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수질개선 추진	대전

## 2. 기관별 분석

### 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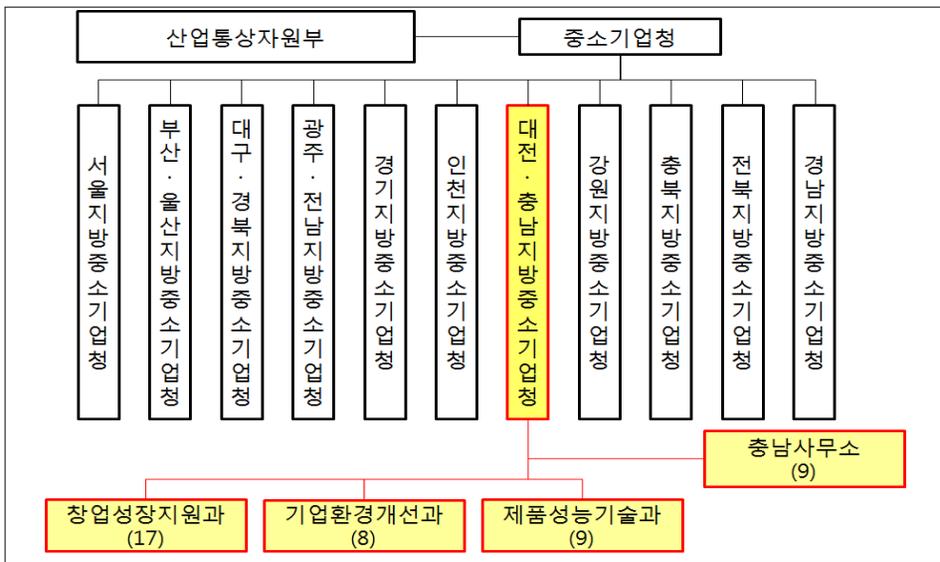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할 지역 내의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청 소속의 2급지 특별지방행정기관임<sup>7)</sup>

7)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3급·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으로 보함

1) 조직 현황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산하에 충남사무소와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 개선과, 제품성능기술과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조직도



자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5>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총 39 명 (본청: 39 명)	10,000백만원

자료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2) 수행 기능 현황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충남사무소는 충청남도 일부 지역(관할 구역 : 충청남도 내 일부 지역 3개 시(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당진군, 태안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창업성장지원과, 기업환경지원과, 제품성능기술과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 시책 집행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 사무 조정·협력,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6>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충남사무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사무소는 충청남도 일부 지역(관할 구역 : 충청남도 내 일부 지역 3개 시(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당진군, 태안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함</li> <li>• 창업성장지원과 기술혁신지원팀으로 구성됨</li> </ul>
창업성장지원과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li> <li>•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지원사무 조정·협력</li> <li>•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li> <li>•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li> <li>•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li> <li>•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li> <li>•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li> <li>•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실험실창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li> <li>•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li> <li>•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li> <li>•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li> <li>•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중소기업청의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li> <li>• 인사·경리·문서·청사관리 및 설비의 사용허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li> <li>•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li> <li>•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li> <li>•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li> <li>•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기업환경개선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li> <li>•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li> <li>• 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업애로 접수·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내 중소기업 ombudsman 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li> <li>• 지역 내 중소기업 ombudsman 공청회 개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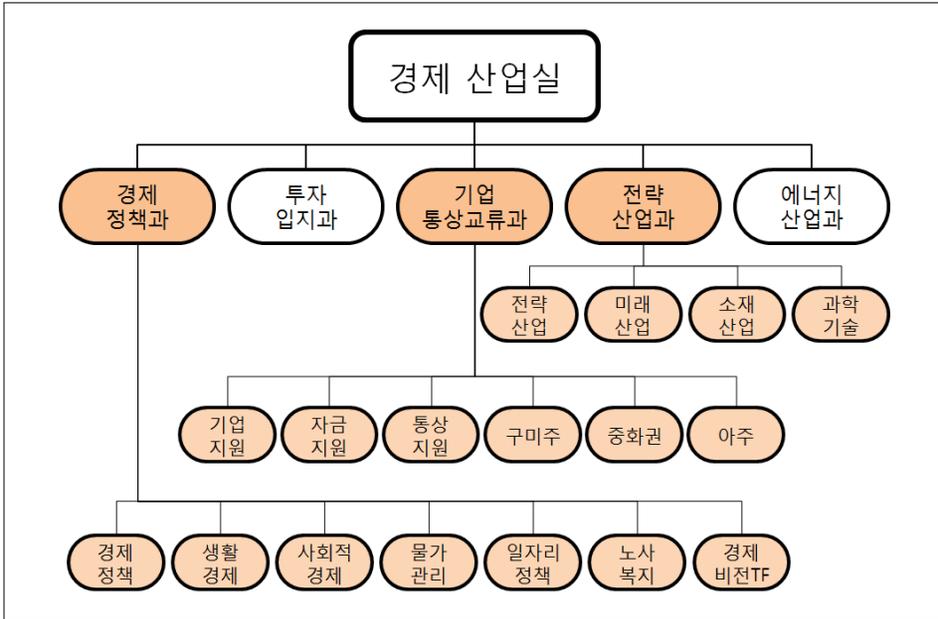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수렴과 고충민원 및 애로·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li> <li>•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li> <li>•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li> <li>•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산업체·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ul>
<p>제품성능기술과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li> <li>•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li> <li>•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li> <li>•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li> <li>•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산학협력실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조직구분 (인원 수)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li> <li>•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li> <li>•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충청남도청 경제산업실의 경제정책과·기업통상교류과·전략산업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제산업실경제정책과·기업통상교류과·전략산업과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남 도청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경제산업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실은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해 5개 과 즉, 경제정책과, 투자입지과, 기업통상교류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나누어 운영중임

<그림 3-3>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표 3-7>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기업지원	창업 성장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 계획 수립</li> <li>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li> <li>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li> <li>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실험실창업·실용실창업 지원 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li> </ul>	경제 산업실 기업 통상 교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원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li> <li>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및 시책추진</li> <li>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li> <li>기업인 대상 운영 지도</li> <li>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li> <li>경제진흥원 운영 및 지원</li> <li>판로지원 및 국내 시장개척(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지원) 및 상품 홍보</li> <li>중소기업제품 공공우선구매(신</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술 인증) 제도 운영 •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애로 현장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인 지원 제도 운영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
			경제 산업실  전략 산업과 경제 산업실  경제 정책과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 충남테크노파크 운영관리 • 미래산업기획연구단 운영 •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 • 정부출연(연)등 R&D 관련 기관 유치계획 수립 • 충남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계획 수립 •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테마과학관 등) • 지방과학축전 운영 • 만족도 조사 • 산학융합지구조성 추진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 중학교육혁신센터 지원 • 지식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 추진 • 바이오산업 육성 및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 • 펀드운영 지원사업 등 벤처산업 육성 • 창업보육센터(BI)사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 제품디자인 지원사업

구분 (중기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기업 환경 개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li> <li>•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li> <li>• 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기업애로 접수·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내 중소기업 ombudsman 위원회 개최 및 자문위원 관리</li> <li>• 지역 내 중소기업 ombudsman 공청회 개최</li> <li>•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수렴과 고충민원 및 애로·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li> <li>•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인턴십 운영</li> <li>• 중소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계획수립</li> <li>• 중소기업체 대한 일자리</li> <li>• 취업알선(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li> <li>•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지역 산업체·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li> <li>•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ul>		
	제품 성능 기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li> <li>•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li> <li>•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관한 사항 •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실 및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 •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		
자금지원	창업 성장 지원과	•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경제 산업실 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조정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및 관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구분 (중기능)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개최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통상 교류과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 충남 신용보증재단 운영지원
			경제 산업실  전략 산업과	• 펀드운영 지원사업 등 벤처산업 육성
통상지원	창업 성장 지원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 산업실  기업 통상 교류과	• 수출지원 종합계획 조정총괄 • 공산품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 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 • 수출기업 육성 • 수출정보·통계 수집 관리 • 통상지원 FTA 총괄 • 해외사무소 통상지원 업무 관리 •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 • 시군 통상업무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통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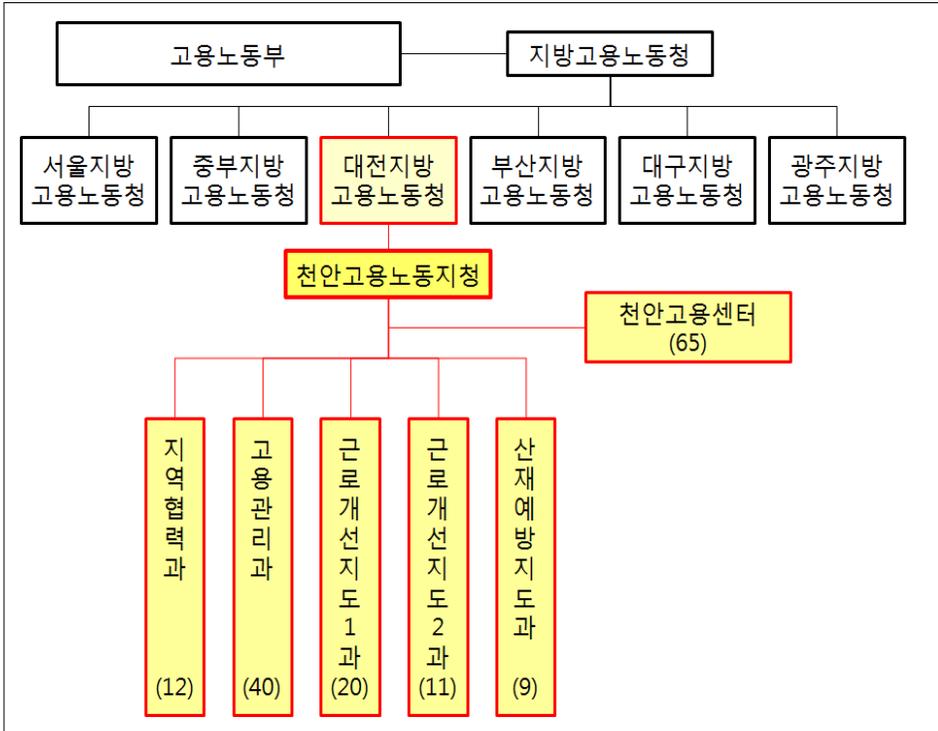
#### 나. 천안고용노동지청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근로조건 보호, 노사분쟁의 예방·조정, 산업재해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증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기관임
  -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3개 시와 1개 군을 관할하고 있음
  - 관내 사업장은 약 4만 8천개, 근로자 및 지역주민은 약 35만 8천명임

1) 조직 현황

- 천안지청은 산하에 지역협력과와 고용관리과, 근로개선지도1·2과, 산재예방지도과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4>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직도



자료: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8> 천안고용노동지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천안고용노동지청	총 153 명 (본청: 102, 하부조직: 51)	-

자료: 천안고용노동지청 내부 자료

주: 2016년 기준

## 2) 수행 기능 현황

- 천안고용노동지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천안고용센터의 경우는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지역을 모두 관할하며 근로개선지도과의 경우 1과와 2과를 분할하여 1과에서는 천안시(동남구), 아산시 음면(음봉면, 염치읍, 영인면, 선장면 제외), 당진군까지를 담당하고, 2과에서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동지역 전체(음봉면, 염치읍, 영인면, 선장면 포함), 예산군을 담당하고 있음

&lt;표 3-9&gt; 천안고용노동지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업무분장
지역협력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li>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업무</li> <li>• 지역 일자리공시제 업무</li> <li>• 고용형태공시제 관련 업무</li> <li>•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li> <li>•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고령자 인재은행 포함)</li> <li>•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li> <li>• 대량고용변도 신고 관련 업무</li> <li>•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li> </ul>
고용관리과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과태료부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 관리)</li> <li>• 세출(예산,회계,결산)</li> <li>•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li> <li>• 정보공개청구</li> <li>• 국정감사 및 기관평가 관리</li> <li>• 청사 및 시설 방호</li> <li>•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li> <li>• 허위구인광고 지도 및 단속</li> <li>•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 확인</li> <li>•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li> <li>•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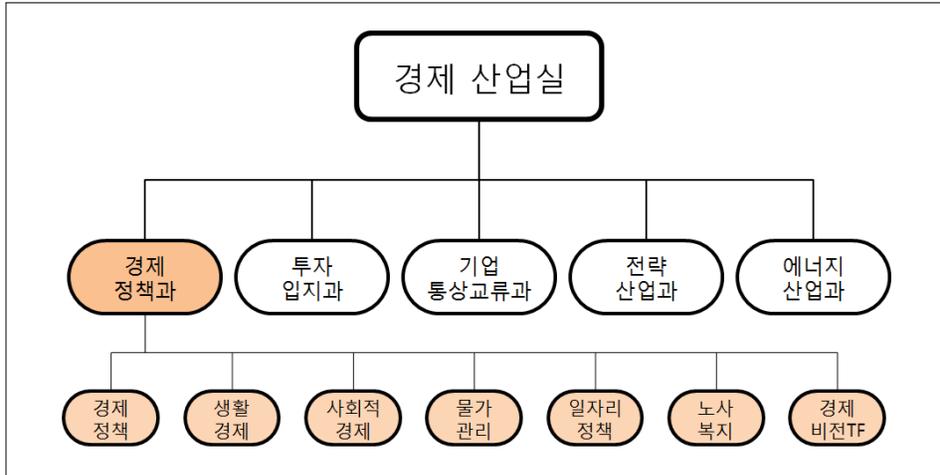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p>근로개선지도1과 (20)</p>	<p>[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시(동남구), 아산시 읍면(음봉면, 염치읍, 영인면, 선장면 제외), 당진군</li> </ul> </li> <li>• 사업장 근로감독</li> <li>•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li> <li>• 노사협의회 운영</li> <li>• 체불임금청산 업무</li> <li>•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업무</li> <li>• 퇴직연금, 퇴직공제 관련 업무 등</li> </ul> <p>[노사지원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 및 관련 신고사건 처리</li> <li>• 노동시장 T/F 운영</li> <li>•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li> <li>•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li> <li>•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li> </ul>
<p>근로개선지도2과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시(서북구), 아산시 동지역 전체(음봉면, 염치읍, 영인면, 선장면 포함), 예산군</li> </ul> </li> <li>• 사업장 근로감독</li> <li>• 장애인, 고령자 고용 지도</li> <li>• 여성고용, 적극적 고용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관련 업무</li> <li>•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관련 업무</li> <li>•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운영 등</li> </ul>
<p>산재예방지도과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관련 업무</li> <li>•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도</li> <li>• 산재 취약계층 관리 및 산재 은폐 조사</li> <li>•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등 관련 업무</li> <li>• 건설재해 예방</li> <li>• 유해 화학물질 관련 지도</li> <li>• 산업보건 관련 업무 등</li> </ul>
<p>천안고용센터 (6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진로지도 업무</li> <li>•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대학청년고용센터,취업지원관)</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창직인턴제,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li> <li>•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li> <li>•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련 업무, 장년취업인턴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li> <li>• 취업알선, 구인·구직 관련 업무</li> <li>• 워크넷상 구인·구직 개척 및 상설채용관(채용지원서비스) 운영</li> <li>• 구직급여 지급 및 착오지급액 환수 업무</li> <li>• 수급자 재취업지원 관련 업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업무</li> <li>•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li> <li>• 고용안정사업(각종 지원금 지급)</li> <li>•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등)</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실업자) 업무</li> <li>• 계좌제(실업자)카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카드 발급 등</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충청남도청 경제산업실의 경제정책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제정책과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남 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를 경제산업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실은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5 개 과 즉, 경제정책과, 투자입지과, 기업통상교류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나누어 운영중임

<그림 3-5>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표 3-10>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고용정책	지역 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li> <li>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업무</li> <li>지역 일자리공시제 업무</li> <li>고용형태공시제 관련 업무</li> <li>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li> <li>고령자 고용현황 및 장년제도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포함)</li> <li>사회적기업 관련 업무</li> <li>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li> <li>외국인 고용관리 업무</li> </ul>	경제 산업실  경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실업자직업훈련 관련업무 추진</li> <li>도내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획 조정</li> <li>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계획수립</li> <li>취업알선(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li> <li>중소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마련</li> <li>외국인근로자 시책추진</li> <li>산업기능요원 파악관리 및 운영업무</li> <li>산업인력 해외 송출에 관한 업무</li> <li>비정규직(공공부문포함)에 대한 계획조정</li> </ul>
	고용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과태료부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자 관리)</li> <li>세출(예산, 회계, 결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li> <li>기업고용보조금 지원</li> <li>청년인턴십 운영</li> </ul>

구분 (중기능)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li> <li>• 정보공개청구</li> <li>• 국정감사 및 기관평가 관리</li> <li>• 청사 및 시설 방호</li> <li>•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 관리</li> <li>• 허위구인광고 지도 및 단속</li> <li>•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 확인</li> <li>•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li> <li>•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li> </ul>		
	천안 고용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진로지도 업무</li> <li>•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li> <li>• 청년 창직인턴제, 청년강소기업체 협프로그램,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li> <li>•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련 업무, 장년취업인턴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li> <li>• 취업알선, 구인·구직 관련 업무</li> <li>• 워크넷상 구인·구직 개척 및 상 설채용관(재용지원서비스) 운영</li> <li>• 구직급여 지급 및 착오지급액 환 수 업무</li> <li>• 수급자 재취업지원 관련 업무, 조 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업무</li> <li>•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li> <li>• 고용안정사업(각종 지원금 지급)</li> <li>•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등)</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실업자) 업무</li> <li>• 계좌제(실업자)카드 및 근로자 직 업능력개발훈련 지원카드 발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뉴딜사업 지원</li> <li>•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업무</li> <li>•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관련 지도감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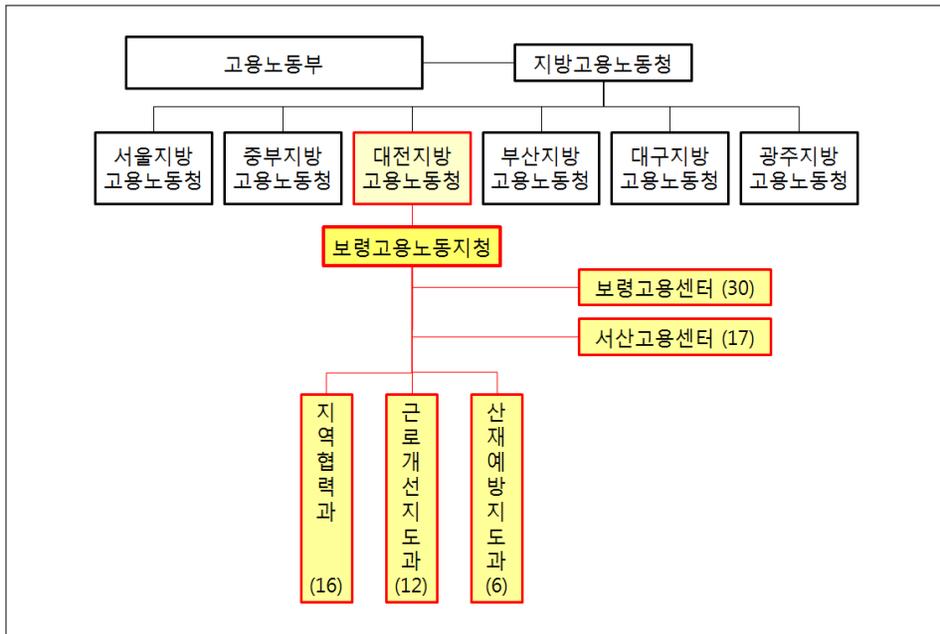
구분 (중기능)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노동정책	근로 개선 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li> <li>• 사업장 근로감독</li> <li>• 노동행정중합지원서비스</li> <li>• 노사협의회 운영</li> <li>• 체불임금청산 업무</li> <li>•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 복지 기금 관련 업무</li> <li>• 퇴직연금, 퇴직공제 관련 업무 등</li> <li>•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 및 관련 신고사건 처리</li> <li>• 노동시장 T/F 운영</li> <li>•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li> <li>•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li> <li>•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li> <li>•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li> <li>• 장애인, 고령자 고용 지도</li> <li>• 여성고용, 적극적 고용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관련 업무</li> <li>•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관련 업무</li> <li>• 성희롱예방교육</li> </ul>	경제 산업실  경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협력에 관한 기획 조정</li> <li>• 노사복지정책업무 추진</li> <li>• 노사안정업무 추진</li> <li>• 노사안정대책</li> <li>• 노사민정협의회 운영</li> <li>• 노동연수원 설립추진</li> <li>• 노동단체 설립 신고 처리</li> <li>• 노동단체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 업무</li> <li>• 노사 동향보고</li> <li>• 산업안전관리 업무</li> <li>•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상담소 지원</li> </ul>
근로자 복지	산재 예방 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관련 업무</li> <li>•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도</li> <li>• 산재 취약계층 관리 및 산재 은폐 조사</li> <li>•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등 관련 업무</li> <li>• 건설재해 예방</li> <li>• 유해 화학물질 관련 지도</li> <li>• 산업보건 관련 업무 등</li> </ul>	경제 산업실  경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상담소 및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지원</li> <li>• 건전 노동조합육성 관리</li> <li>• 노사안정교육홍보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li> <li>•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li> <li>• 기능대학 설립추진 지원</li> <li>•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li> <li>• 산업안전문화 관련 업무</li> </ul>

## 다. 보령고용노동지청

### 1) 조직 현황

- 보령고용노동지청은 근로조건 보호, 노사분쟁 예방·조정,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복지증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소속기관임
  - 보령고용노동지청장(4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함
  -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을 관할함
-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산하에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6> 보령고용노동지청 조직도



자료: 보령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11> 보령고용노동지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보령고용노동지청	총 78 명 (본청: 26 , 하부조직: 52)	-

자료 : 보령고용노동지청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 2) 수행 기능 현황

○ 보령고용노동지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지역협력과,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과 위반에 관한 조치업무,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직업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12> 보령고용노동지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업무분장
지역협력과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일부업무 (서산시, 태안군 포함)</li> <li>• 예산의 집행 및 관리</li> <li>• 국유재산, 물품 관리</li> <li>• 개인정보보호, 보안관련 업무</li> <li>• 인사, 복무관련 업무</li> <li>• 외국인고용관리(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단속 등)</li> <li>• 사회적일자리 사업</li> <li>• 직업안정법에 의한 신고, 등록, 허가 (단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시군구청에서 담당)</li> <li>•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li> <li>•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처리</li> <li>• 고령자고용현황 및 정년지도</li> <li>•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일자리공시제</li> <li>• 장애인고용지도</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p>근로개선지도과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li> <li>•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업무</li> <li>• 소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업무</li> <li>• 노무관리 지도 업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의 민원업무</li> <li>• 노사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업무,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청산지도</li> <li>• 최저임금 지도 및 임금조사 업무,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에 관한 업무</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지도 업무</li> <li>• 개업 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업무지도 감독</li> <li>• 사업장관리 전산업무의 운영,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등 운영지도</li> <li>•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규약 관리</li> <li>•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li> <li>•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li> <li>•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li> <li>•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관련 업무, 지역 노사문화정착 활동 지원 업무</li> <li>•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노사관계 관련 동향파악 및 분석</li> <li>•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li> <li>• 남녀고용차별 개선 지도·감독</li> <li>•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li> <li>• 연소근로자 특별보호(취직 인허 및 인가 등)</li> <li>•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도·감독,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도</li> <li>•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운영</li> <li>•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li> <li>•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및 운영</li> </ul>
<p>산재예방지도과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li> <li>•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시행·지도·조정 및 심사평가</li> <li>• 사업장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지정기관 지도·감독</li> <li>•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도 업무</li> <li>• 사업장 설치 이전 변경심사에 관한 업무</li> <li>• 안전보건진단업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승인·지도 업무</li> <li>•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지도, 사업장 무재해운동 지도 업무</li> <li>• 직업병 예방 지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지도 업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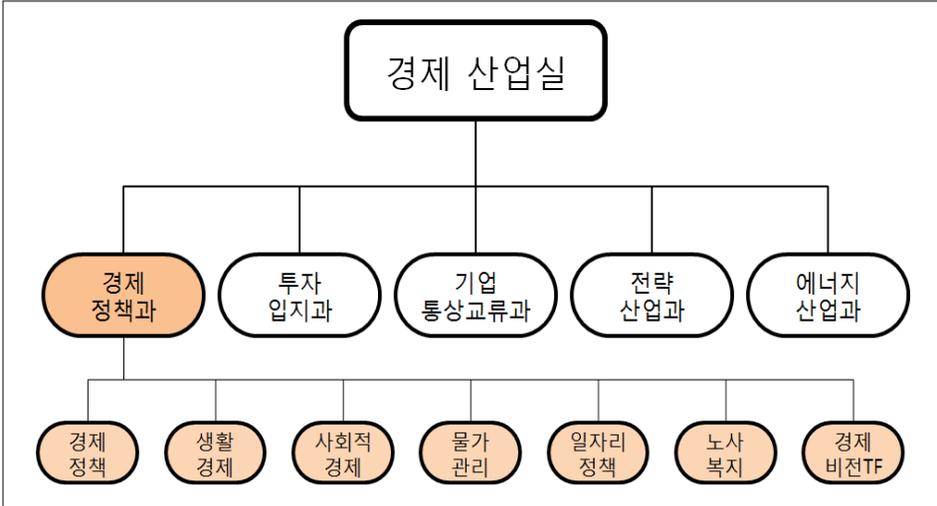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위험시설 자체심사 지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지도 업무</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이행지도, 각종 보호구 사용 지도 업무</li> <li>•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용자 안내 및 지도 업무</li> <li>• 지역 내 산업재해조사기동반 편성 및 운용</li> <li>• 진폐관리구분의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 업무</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통계의 수집</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보령고용센터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li> <li>• 직업상담·직업지도·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의 제공</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li> <li>•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지급</li> <li>•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li> <li>• 실업대책사업 실시 및 안내</li> <li>• 고용대책 수립및 추진 등</li> <li>•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서산고용센터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구역: 서산시, 태안군</li> <li>• 고용대책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li> <li>•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li> <li>• 사우디사회보험환불관련 업무</li> <li>• 취업알선, 직업지도, 실업인정 및 취업담임 관리, 직업훈련 상담 업무</li> <li>• 구인업체개척사업 업무</li> <li>•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 업무</li> <li>• 수급자격, 실업급여 지급관련 업무</li> <li>•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급여, 취업촉진수당 업무</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충청남도청 경제산업실의 경제정책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제정책과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남 고용노동정책 관련 업무는 경제산업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실은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

치, 도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5개 과 즉, 경제정책과, 투자입지과, 기업 통상교류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나누어 운영중임

<그림 3-7>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표 3-13> 보령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고용정책	지역 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고용관리(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단속 등)</li> <li>사회적일자리 사업</li> <li>직업안정법에 의한 신고, 등록, 허가 (단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시군구청에서 담당)</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li> <li>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처리</li> <li>고령자고용현황 및 정년지도</li> <li>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li> </ul>	경제 산업실  경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실업자직업훈련 관련업무 추진</li> <li>도내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획 조정</li> <li>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계획수립</li> <li>취업알선(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li> <li>중소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마련</li> <li>외국인근로자 시책추진</li> <li>산업기능요원 파악관리 및 운</li> </ul>

구분 (중기능)	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일자리공시제</li> <li>장애인고용지도</li> <li>고용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운영</li> <li>근로자파견사업 허가 및 지도·감독</li> <li>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부</li> <li>산업인력 해외 송출에 관한 업무</li> <li>비정규직(공공부문포함)에 대한 기획조정</li> <li>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li> <li>기업고용보조금 지원</li> <li>청년인턴십 운영</li> <li>녹색뉴딜사업 지원</li> <li>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업무</li> <li>「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관련 지도감독</li> </ul>
	보령 고용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상담·직업지도·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의 제공</li> <li>직업능력개발훈련</li> <li>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지급</li> <li>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li> <li>실업대책사업 실시 및 안내</li> <li>고용대책 수립 및 추진 등</li> <li>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li> </ul>		
	서산 고용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대책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li> <li>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li> <li>사우디사회보험환불관련 업무</li> <li>취업알선, 직업지도, 실업인정 및 취업담임 관리, 직업훈련 상담 업무</li> <li>구인업체개척사업 업무</li> <li>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 업무</li> <li>수급자격, 실업급여 지급관련 업무</li> <li>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급여, 취업촉진수당 업무</li> </ul>		
노동정책	근로 개선 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업무</li> <li>소관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업무</li> <li>노무관리 지도 업무, 근로기준법</li> </ul>	경제 산업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협력에 관한 기획 조정</li> <li>노사복지정책업무 추진</li> <li>노사안정업무 추진</li> <li>노사안정대책</li> <li>노사민정협의회 운영</li> <li>노동연수원 설립추진</li> </ul>

구분 (중기능)	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p>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의 민원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관계자 교육훈련 및 지도업무,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청산지도</li> <li>• 최저임금 지도 및 임금조사 업무,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용에 관한 업무</li> <li>•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지도 업무</li> <li>• 개업 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업무지도 감독</li> <li>• 사업장관리 전산업무의 운영,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등 운영지도</li> <li>•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규약 관리</li> <li>•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li> <li>•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li> <li>•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li> <li>•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관련 업무, 지역 노사문화정착 활동 지원 업무</li> <li>•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노사관계 관련 동향파악 및 분석</li> <li>•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li> <li>• 남녀고용차별 개선 지도·감독</li> <li>•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타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li> <li>• 연소근로자 특별보호(취직 인허 및 인가 등)</li> <li>•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도·감독,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도</li> </ul>	경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단체 설립 신고 처리</li> <li>• 노동단체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 업무</li> <li>• 노사 동향보고</li> <li>• 산업안전관리 업무</li> <li>• 근로자복지회관 및 노동상담소 지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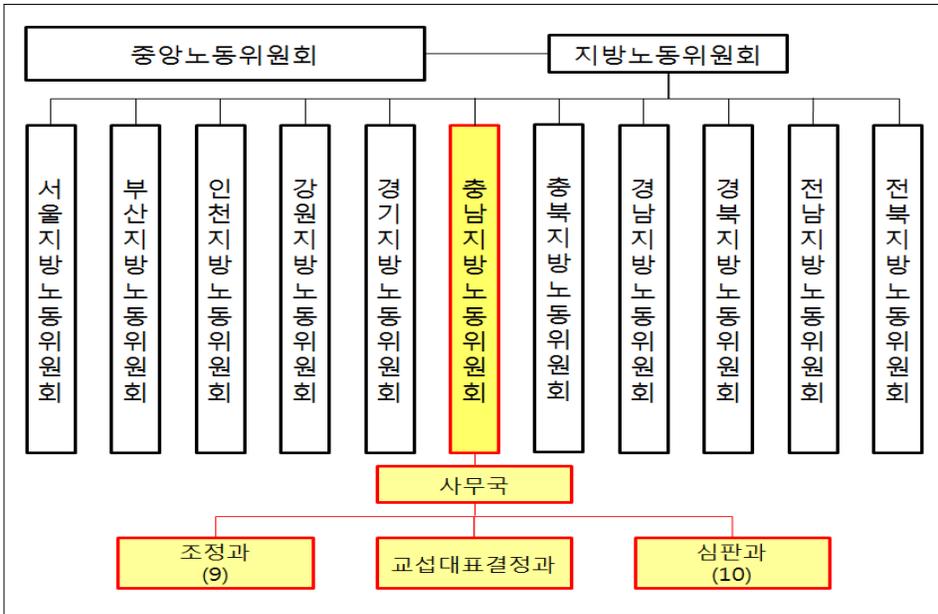
구분 (중기능)	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근로자 복지	산재 예방 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시행·지도·조정 및 심사평가</li> <li>• 사업장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각종 지정기관 지도·감독</li> <li>•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지도 업무</li> <li>• 사업장 설치 이전 변경심사에 관한 업무</li> <li>• 안전보건진단업무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승인·지도 업무</li> <li>•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지도, 사업장 무재해운동 지도 업무</li> <li>• 직업병 예방 지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 지도 업무</li> <li>• 사업장 위험시설 자체심사 지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지도 업무</li> <li>•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 이행지도, 각종 보호구 사용 지도 업무</li> <li>•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융자 안내 및 지도 업무</li> <li>• 지역 내 산업재해조사기동반 편성 및 운용</li> <li>• 진폐관리구분의 재심사청구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 업무</li> <li>•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통계의 수집</li> </ul>	경제 산업실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상담소 및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지원</li> <li>• 건전 노동조합육성 관리</li> <li>• 노사안정교육홍보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li> <li>•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li> <li>• 기능대학 설립추진 지원</li> <li>•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li> <li>• 산업안전문화 관련 업무</li> </ul>

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1) 조직 현황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충남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이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판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임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 산하에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과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직도



자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총 20 명 (본청: 20)	535 백만원 (인건비제외)

자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 2) 수행 기능 현황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조정과, 교섭대표결정과, 심판과에서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교섭에 관한 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업무분장
조정과 (9)	<p>[조정(調停, Medi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li> <li>•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li> <li>※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li> </ul> <p>[중재(仲裁, Arbi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 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 부를 결정 할 수 있음</li> <li>•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li> </ul> <p>[필수유지업무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li> <li>•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p>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li> <li>• 긴급조정결정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li> <li>•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li> </ul>
교섭대표 결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li> <li>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li> <li>-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li> </ul> </li> <li>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li> <li>-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li> </ul> </li> <li>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제2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li> <li>-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 결정</li> </ul> </li> <li>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li> <li>-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결정</li> </ul> </li> <li>※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사건에 준하여 처리</li> <li>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li> <li>-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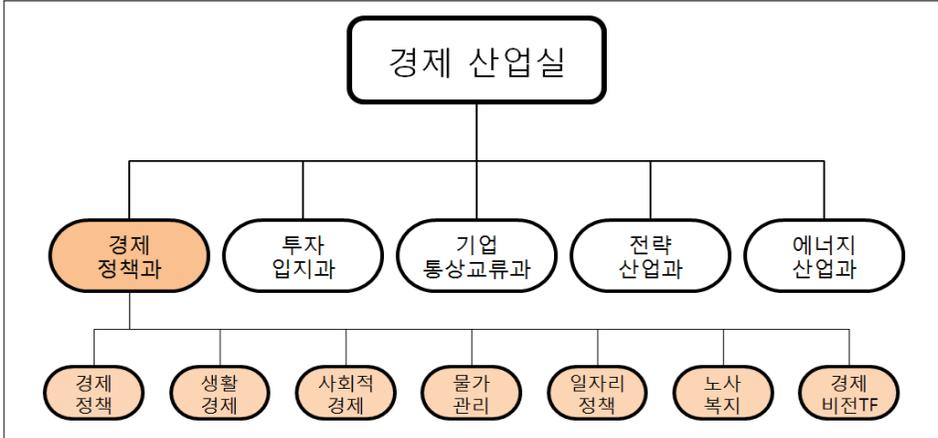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p>심판과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li> </ul> <p>[당사자 신청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li> <li>-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li> <li>- 당사자간 화해 권고</li> </ul> </li> <li>②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신청</li> <li>-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li> <li>- 당사자 간 화해 권고</li> </ul> </li> <li>③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li> <li>-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li> </ul> </li> <li>④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li> <li>-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li> <li>-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li> <li>-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li> <li>-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li> <li>-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li> <li>-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li> </ul> </li> </ul> <p>[의결요청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li> <li>-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li> <li>-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li> <li>-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li> <li>-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li> <li>-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li> </ul> <p>[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li> <li>-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li> </ul> <p>[정책적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li> <li>-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청남도청 경제산업실의 경제정책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제정책과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남 노동 정책 등 관련 업무는 경제산업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실은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도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5개 과 즉, 경제정책과, 투자입지과, 기업통상교류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로 나누어 운영중임

<그림 3-9>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표 3-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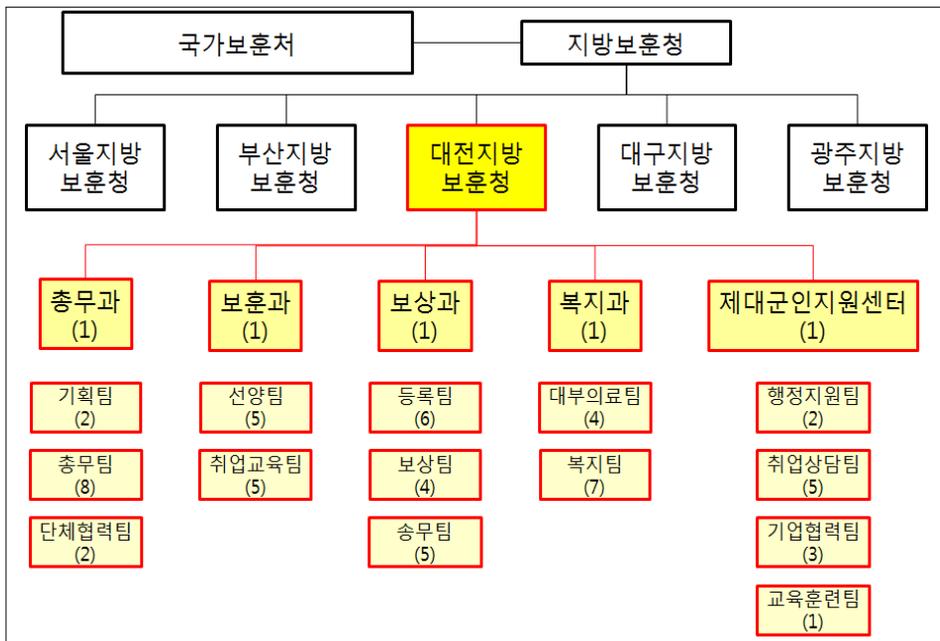
구분 (중기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심판기능	심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li> <li>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li> <li>노동부 행정행위의 사전 의결</li> <li>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li> </ul>		
조정기능	조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긴급 조정</li> </ul>	경제 산업실 경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협력에 관한 기획 조정총괄</li> <li>노사안정대책</li> <li>노동단체 설립 신고 처리</li> </ul>
	교섭대표 결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li> </ul>		
정책기능	심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조건 개선 권고</li> </ul>	경제 산업실 경제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사안정교육홍보 및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li> <li>산업안전문화 관련 업무</li> <li>비정규직(공공부문포함)에 대한 기획조정</li> <li>노사복지정책업무</li> </ul>

마. 대전지방보훈청

1) 조직 현황

- 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 하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임
  - 대전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으로 보함
- 대전지방보훈청은 총무과 내 기획계, 서무계, 단체협력계, 보훈과 내 직보계, 선양교육계, 보상과 내 송무팀, 보상계, 신검계, 자력계, 복지과 내 이동팀, 복지계, 대부계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10> 대전지방보훈청 조직 구성



자료: 대전지방보훈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17> 대전지방보훈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대전지방보훈청	총106名 (본청: 48, 하부조직: 58)	31,200 백만원

자료 : 대전지방보훈청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 대전지방보훈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총무과,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금, 보훈복지, 제대군인 취업상담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18> 대전지방보훈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업무분장
총무과 (1)	기획팀 (2)	• 기획, 예산
	총무팀 (8)	• 인사, 교육 • 물품, 전산 • 회계, 급여 • 개인정보, 보안 • 정보공개, 복무 • 시설, 국유재산
	단체협력팀 (2)	• 단체담당
보훈과 (1)	선양팀 (5)	• 보훈단체 관리·지원 • 현충시설 건립·관리 • 나라사랑교육 • 홍보, 행사지원 • 독립유공자포상
	취업교육팀 (5)	• 취업알선 • 교육지원 • 취업수강료, 취업증명 • 취업상담사

조직구분		업무분장
보상과 (1)	등록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록</li> <li>• 유족 등록</li> <li>• 고엽제등록</li> <li>• 증명발급</li> </ul>
	보상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수준조사, 신상변동</li> <li>• 보상금</li> <li>• 참전담당</li> </ul>
	송무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소송</li> </ul>
복지과 (1)	대부의료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담당</li> <li>• 대부담당</li> <li>• 차량, 보철구 담당</li> </ul>
	복지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복지</li> <li>• 보훈복지사</li> <li>• 이동보훈팀 운영지원</li> </ul>
제대군인 지원센터 (1)	행정지원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지원</li> </ul>
	취업상담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군인 취업상담 및 경력설계</li> </ul>
	기업협력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군인 적합직종 발굴</li> </ul>
	교육훈련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훈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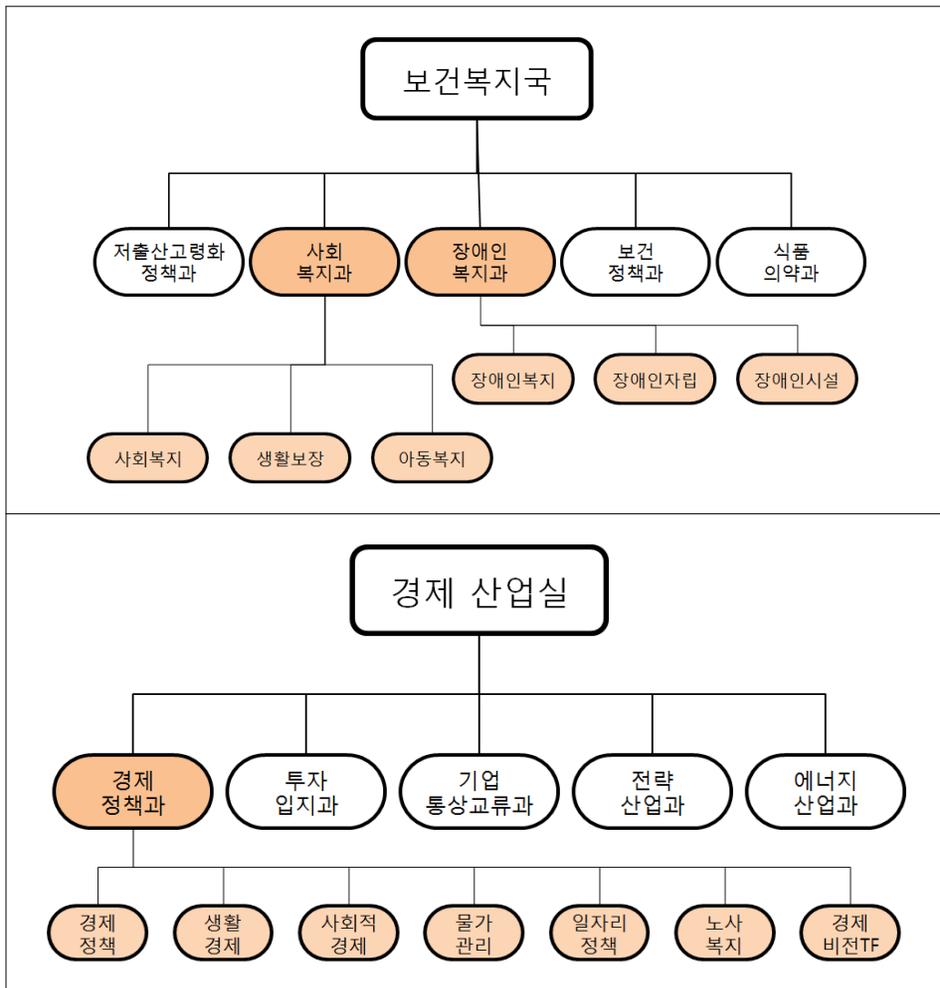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대전지방보훈청은 충청남도청의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제산업실의 경제정책과(고용관련) 및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의료지원 및 보건) 내의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충청남도청 보건복지국은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관리 및 실행계획 운영 및 보훈 업무, 지역사회복지 업무 등을 위하여 5개 과 즉, 저출산고령화정책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및 장애인복지과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는 도내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1> 충남도청 보건복지국·경제산업실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lt;표 3-19&gt; 대전지방보훈청와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보훈청		충남도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보훈 선양	보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단체 관리·지원</li> <li>• 현충시설 건립·관리</li> <li>• 나라사랑교육</li> <li>• 홍보, 행사지원</li> <li>• 독립유공자포상</li> <li>• 취업알선</li> <li>• 교육지원</li> <li>• 취업수강료, 취업증명</li> <li>• 취업상담사</li> </ul>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보훈 행사 및 기념사업 업무</li> <li>•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의 운영 지원</li> <li>•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 관리</li> <li>•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업무</li> <li>•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li> <li>•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li> </ul>
등록 및 보상	보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록</li> <li>• 유족 등록</li> <li>• 고엽제등록</li> <li>• 증명발급</li> <li>• 생활수준조사, 신상변동</li> <li>• 보상금</li> <li>• 참전담당</li> <li>• 행정소송</li> </ul>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예수당, 참전수당, 장례비, 생일축하금 등 지원</li> </ul>
복지 지원	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담당</li> <li>• 대부담당</li> <li>• 차량, 보철구 담당</li> <li>• 노후복지</li> <li>• 보훈복지사</li> <li>• 이동보훈팀 운영지원</li> </ul>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 관리</li> <li>• 장애인의료재활 지원</li> <li>• 장애인재활사업 지원</li> <li>•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li> <li>•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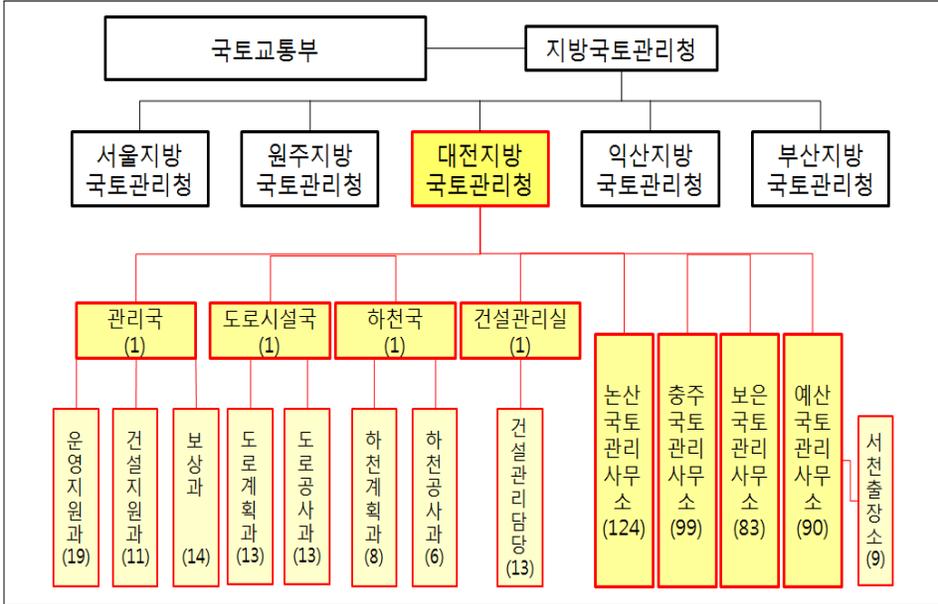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보훈청		충남도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제대군인 지원	제대 군인 지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대군인 취업상담 및 경력설계</li> <li>• 제대군인 적합직종 발굴</li> <li>• 교육훈련</li> </ul>	경제 산업실  경제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알선(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li> <li>• 중소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마련</li> <li>• 기업고용보조금 지원</li> <li>• 녹색뉴딜사업 지원</li> <li>•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업무</li> <li>• 「충남일자리종합센터」운영 관련 지도감독</li> </ul>

#### 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1) 조직 현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함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관리국 내 운영지원과, 건설지원과, 보상과, 도로시설국 내 도로계획과, 도로공사와, 하천국 내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건설관리실 내 건설관리 담당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직도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총 504명 (본청: 98, 하부조직: 406)	1,100,000 백만원

자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2) 수행 기능 현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관리국, 도로시설국, 하천국, 건설관리실을 두고 도로계획·계약 관리, 공사관리, 도로연결허가, 하천점용허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 안전관리·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논산·충주·보은·예산)에서는 각각 운영지원과, 보수과, 구조물과를 두고 도로 하자·안전 관리, 도로 시설물 관리, 과적차량단속업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3-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조직구분		업무분장
관 리 국 (1)	운영지원과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리,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li> <li>• 관급자재, 건설기술자 제재사무</li> <li>• 청렴,감사지원,공직자재산등록</li> <li>• 복무, 징계, 상훈, 교육, 비공무원 노무관리 등</li> <li>• BSC, 민원 관리 등</li> </ul>
	건설지원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용역 계약, 국회 등</li> <li>• 도로계획과 계약관리(공사, 감리, 용역, 폐기물)</li> <li>• 예산 및 지출 등 경리계 업무</li> <li>• 예산(예산·결산 국회업무 포함), 지역개발업무 보조</li> <li>• 공사와 소관 계약(공사,감리,문화재,폐기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li> </ul>
	보상과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보령 3공구, 국립생태원- 동서천IC, 덕산-고덕IC, 삼교천 신흥지구, 문방지구, 삼교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li> <li>• 논산국토 관내 민원</li> <li>• 괴산-음성, 단양-가곡, 단양IC-대강, 서북-성거, 노성지구, 망성지구 등 보상업무</li> <li>• 국유재산, 보령-청양1, 음암-성연, 보령-부여</li> <li>• 계획(예산, 감사, 국회, BSC), 위탁보상 총괄, 염성-용두</li> </ul>
도 로 시 설	도로계획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 청양-우성1, 청양-우성2, 덕산-고덕IC, 대산~석문, 음암~성연, 서산-황금산, 학봉-공암</li> <li>• 설계 : 연산~두마1,2, 성연~인지, 성주우회, 보령-청양1,2공구, 청양-홍성1,2공구, 이호-양곡 실시설계</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자 도로 : 평택~부여~익산, 안성~세종</li> <li>• 도로연결허가</li> <li>• 공사관리관</li> <li>• 사후평가용역</li> <li>• 도로점용 업무, 사업비 관리 등</li> </ul>
	도로공사과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관리 : 괴산~음성, 충청내륙1 (설계용역감독관) 충청내륙 1-1,1-2,2-1,2-2,3-1,3-2, 도화~송학, 연금~금성, 상촌~황간1, 상촌~황간 2, 괴산~괴산IC, 용두~동면, 인포~보은 1,2,3</li> <li>• 수송대책업무 : 단양~가곡, 단양IC~대강.</li> <li>• 비상계획, 재난, 대테러</li> <li>• 국도ITS, 건설CALS/EC, 도로대장 등 도로정보화 업무</li> </ul>
하 천 국 (1)	하천계획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점용허가 등의 행정처분</li> <li>• 국유재산관련 업무 및 하천관리실태점검</li> <li>• 국가하천내의 소송 관련 총괄</li> <li>• 하천구역 매수청구 총괄</li> <li>• 폐천부지 업무 총괄</li> <li>•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인허가</li> <li>• 논산천 탐정지구, 노성천 노성지구 등 3개소 공사관리관</li> <li>• 미호천 하천기본계획 등 6건 용역 감독</li> <li>• 국가하천유지관리(3개보, 준설토, 자치단체 보조금 포함)에 관한 사항 총괄</li> <li>•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li> <li>• 도로공사 업무</li> <li>• 환경관련 업무, 용역 평가기준 작성</li> </ul>
	하천공사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하천정비사업 업무</li> <li>• 재해대책 업무</li> <li>• 하천국 하자관련 업무</li> </ul>
	건설관리실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 부실신고처리(건축) 등</li> <li>• 점검업무</li> <li>• 건설관리실 계획주무 업무</li> <li>• 설계자문, 재난·안전, 품질관리, 품질시험, 각종 점검 등</li> <li>• 시공실태점검 / 부실별점 관리</li> <li>•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업무, 재난관리(안전점검의 날, 각종 훈련 등) 업무</li> <li>• 기술자문(심의) 구성 및 운영, 회의자료 및 업무계획, 용역 및 시공평</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가, 감사, 국회업무 등 • 품질검사 전문기관 관련 • 건설관리실 시험 및 시험포장 승인 업무
논 산 국 토 관 리 사 무 소 (1)	운영지원과 (17)	• 관인·상훈관리, 용지보상, 사법업무 • 인사 수입 소송 보안 노조 국유재산 등 • 예산,지출,관급자재 • 청사방호 • 계약업무, 하자관리 • 민원관리 • 청사 경비 업무 • 도로점용 수입업무 보조
	보수과 (49)	• 시설물유지관리(FMS) •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 및 관련업무 •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CSMS) • 포장보수 폐기물 관련 협약 • 접도구역 점검 • 재해(설해) 대책 • 포장도 보수(PMS) 계획 수립 •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관리 • 줄음شط터 계획 수립 및 시행 • 도로현황 조사 관리 • 도로보수현황 자료입력 및 관리 •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관리 • 도로유지 보수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 건설사업관리(PQ, 적격심사, 감독 등) 관련 업무 • 도로정비심사 • 교통사고 10%줄이기 관련 업무 •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척척서비스) • 장비관리 • 차량 및 건설기계 담당 • 도로부대시설 관리 및 훼손 원산복구, 특별교통대책 • 장비운행 • 도로보수 업무 • 과적단속 업무

조직구분	업무분장
구조물과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산국토 구조물과업무총괄</li> <li>• 건설CALs/EC, 도로대장 등 도로정보화 업무</li> <li>• 4, 23, 32, 43호선 도로관리사업 업무</li> <li>• 도로풍수해 업무</li> <li>• 시설물 점검 총괄</li> <li>• 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li> <li>• 관내 터널관련 보수공사(용역) 설계 및 공사관리</li> <li>• 터널 위탁관리 용역 및 직영터널 관리</li> <li>• BSC 성과관리, 검문소 축중기 관리</li> <li>• 직영작업 및 도로시설물 손괴 처리</li> <li>• 도로수해업무</li> <li>• 담당노선(17,36,37,39호선) 시설물관리 및 민원처리</li> <li>• 과적차량 단속업무</li> <li>•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관리, 운행제한차량 협의 및 허가,</li> <li>• 관내 및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업무 직영터널 및 배수펌프 전기시설물 관련 업무</li> </ul>
하천관리과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하천보수원 관리 및 직영작업 업무</li> <li>• 담당구역 하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청주,세종,공주,부여,논산,서천,익산,군산,청양</li> </ul> </li> <li>• 하천보수원 관리 및 직영작업 총괄</li> <li>• 하천법 위반행위 단속업무 총괄</li> <li>• 환경관리(수질관리)에 관한 업무</li> <li>• 하천점용 협의 및 검토</li> <li>• 하천사업 및 용역사업 감독(공사관리업무 포함)</li> <li>• 하천관리 계획 및 예산업무</li> <li>• 용역(기본,실시,감리,안전진단,점검)PQ업무</li> <li>• 하천보수 작업일보 관리</li> <li>• 하천관리과 차량 및 장비관리 업무</li> <li>• 하천순찰 및 시설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 무주, 공주, 부여, 영동, 양화, 서천, 금산, 세도, 청양, 군산</li> </ul> </li> </ul>
충주국토 운영지원과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업무, 소송, 정보공개</li> <li>• 민방위 담당</li> <li>• 보안담당</li> <li>• 적협업</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관 리 사 무 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업무, 교육, 정보공개, 상훈업무</li> <li>• 운행제한차량단속업무</li> <li>• 도로점용</li> <li>• 계약 업무</li> <li>• 하자관리</li> <li>• KISKON 관리(구조물분야)</li> </ul>
	보수과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비관리청허가 행정업무 총괄</li> <li>• 도로점용허가 대장관리</li> <li>• 건설인허가 시스템 관리</li> <li>• 소송현황 관리</li> <li>• 신기술.하자업무</li> <li>• 도로대장 및 도로현황조사 업무총괄</li> <li>• 도로점용 기술검토, 민원, 관원, 소송</li> <li>• 담당노선 직영감독</li> <li>• 설계 및 공사.용역감독(공사관리관수행)</li> <li>• 제설대책 담당</li> <li>• 음성지역 노선담당</li> <li>• 담당노선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li> <li>• 낙석산사태(CSMS) 업무</li> <li>• 해빙기 관련 업무</li> <li>• 교통사고 10%줄이기 관련 업무</li> <li>• 음성·증평3,21,36,37호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관련업무 보조</li> <li>• 도로시설물(옹벽, 절토사면) CALS시스템 관리</li> <li>• 도로이용불편신고(적적해결서비스)업무</li> <li>• 장비 및 차량운행업무</li> <li>• 직영작업 계획 수립</li> <li>• 신속대응팀 운영</li> <li>• 장비운행업무</li> <li>• 장비정비업무</li> <li>• 차량 및 건설기계 담당</li> <li>• 도로보수 업무</li> </ul>
	구조물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직영작업 담당</li> <li>• 교통사고 피해조사(시설물) 및 손괴처리 담당</li> <li>• 소송(국가배상) 업무</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보 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도로,병목지점 조사 및 현황관리 보조</li> <li>•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관리 관련 업무</li> <li>• 국유재산 관련 업무</li> <li>• 기록물 관리업무</li> <li>• 생태통로 관리 및 모니터링</li> <li>• 충주·괴산 3,34,37호선</li> <li>• 운행제한차량단속업무</li> <li>• 민원인 안내 청사순찰</li> <li>• 신속대응팀</li> <li>• 차량 및 건설기계 검사 신청</li> <li>• 지게차 관리</li> <li>• 제한차량 운행허가</li> </ul>
	운영지원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급자재 계약업무, 교육, 보안, 비상계획</li> <li>• 물품, 수입징수 업무</li> <li>• 보상, 국유재산, 계약, 용역(구조물과)</li> <li>• 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li> </ul>
	보수과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정비계획 수립 및 집행</li> <li>• 부속품 수급계획 및 집행</li> <li>• 장비배차 및 운용</li> <li>• 유류불출 및 소모품관리</li> <li>• 도로표지 관련업무</li> <li>• 차선도색 업무</li> <li>• 사업집행계획 수립, 예산 관련 업무</li> <li>• 공사관리 및 용역감독 업무</li> <li>•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 도로운영사업 설계 및 공사 담당업무</li> <li>• 도로점용 허가</li> <li>• 차량 및 건설기계 담당</li> <li>• 부속품운영 및 관리-장비등록검사-장비정비업무-측중계 관리</li> <li>• 공사(차선)업무 보조</li> <li>• 장비 운용 실적 보고 업무</li> <li>• 장비 작업배차 및 운용 업무</li> <li>• 도로보수</li> <li>• 도로시설물 손괴처리</li> <li>• 해빙기업무</li> <li>• 도로대장 및 도로현황조서 업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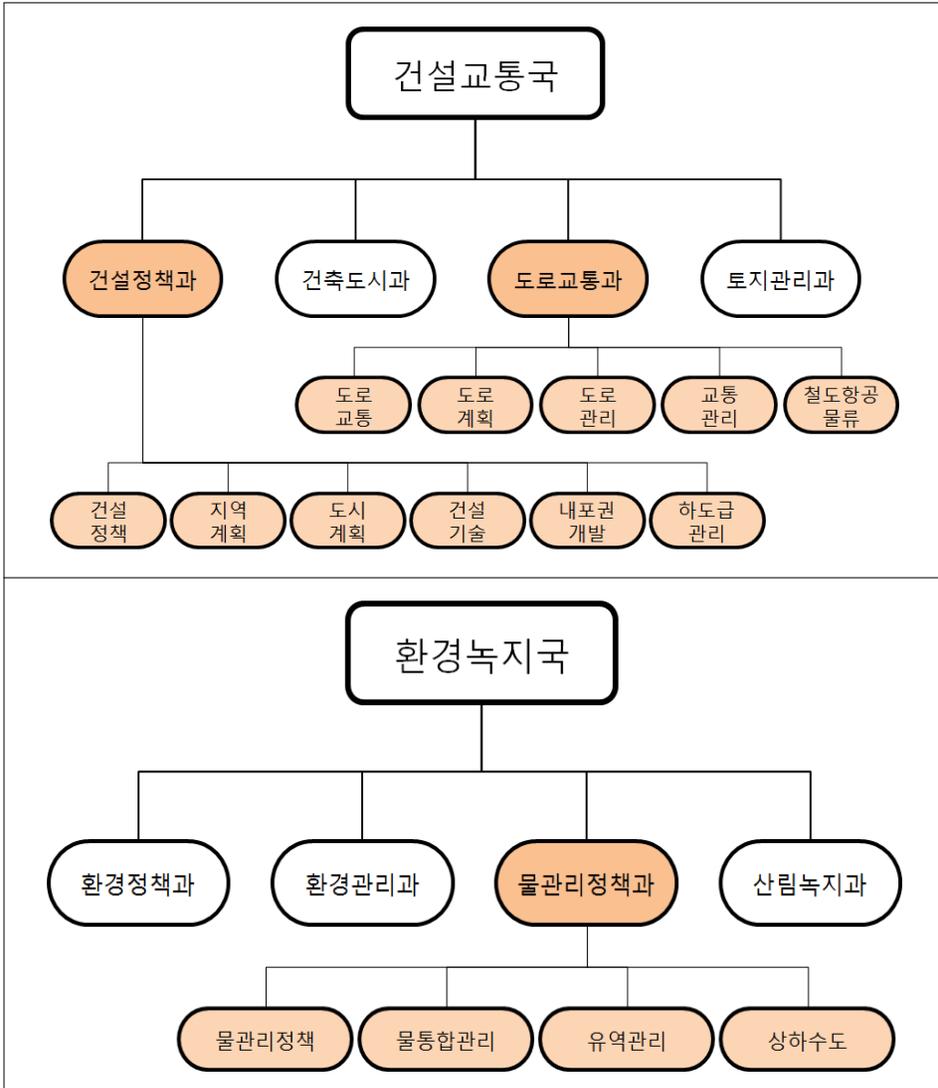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수송대책 업무</li> <li>• 직영작업 관리업무</li> </ul>
	구조물과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25, 37호선 노선관리.</li> <li>• 운행제한차량 관련업무</li> <li>• 재난관련업무 총괄</li> <li>• 시설물 관리</li> <li>• 터널관리(토목제외)</li> <li>• 터널운영 위탁관리용역(보조)</li> <li>• 교량 및 터널 일상관리</li> <li>• 지하차도 전기시설 관리</li> <li>• 시설물 전산업무(BMS) 및 전산관련업무</li> <li>•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업무</li> </ul>
예산 국토 관리 사무 소 (1)	운영지원과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복무), 사법업무, 소송, 감사, 국회</li> <li>• 예산 및 지출 업무</li> <li>• 용지보상</li> <li>• 관급자재 및 계약 업무</li> <li>• 과태료징수업무 사법업무</li> </ul>
	보수과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점용(연결) 및 비관리청공사시행 인·허가</li> <li>• 하자관리</li> <li>• 안전관리, 직영작업.</li> <li>• 도로점용(비관리청),공사설계 및 감독업무</li> <li>• 설해대책 업무</li> <li>• 교통사고조사 및 손궤(도로, 시설물)업무, 직영공사</li> <li>•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운용 및 관리업무</li> <li>• 불법점용 불법시설물, 도로손괴,도로이용 불편신고처리</li> <li>• 장비관리</li> </ul>
	구조물과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 점검(일상, 특별점검 등) 총괄</li> <li>• 재난관리업무(재난대응한국훈련 및 풍수해) 담당</li> <li>• 관내 시설물 현황(특정관리대상)관리 및 내진보강·성능개선·교량 개축·통수단면 부족 등 현황관리</li> <li>• 기술 서무(법령 제도 재개정·변경 등), 정보공개처리</li> <li>• 공사대장 정리 및 시설물 현황관리</li> <li>• 담당노선 시설물 점검 및 민원처리(아산일부, 천안)</li> <li>• 건설CALS 등 전산시스템 관리</li> <li>• 하자(정기하자, 만료검사) 업무</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관리(당진일부, 서산, 태안), 물품 및 비품 관리업무, 교통사고 피해조사, 시설물현황관리, 터널 조명등 및 전기시설관리, 지하차도 배수펌프 시설관리</li> <li>• 과적차량단속담당업무</li> <li>• 운행허가업무</li> <li>• 과태료부과, 이의제기 및 사법 업무</li> <li>• 용지보상업무</li> <li>• 제한차량 업무</li> </ul>
서천출장소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천지역 관리</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도로교통과 및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본청과 4개의 국토관리사무소 중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조직의 기능을 비교하였음
  -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은 건설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주택정책, 도로관리, 물류, 토지관리 등을 위해 4개 과 즉,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토지관리과로 구성되어 있고 건설정책과 및 도로교통과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청 환경녹지국은 도내 환경정책, 환경관리, 물관리, 산림녹지관리 등을 위해 4개 과 즉,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물관리정책과, 산림녹지과로 구성되어 있고 물관리정책과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림 3-13> 충남도청 건설교통국·환경녹지국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표 3-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도로시설 관리 사무소 보수과/ 구조물 과	도로 시설국 국토 관리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계획 관련 계약관리(공사, 감리, 용역, 폐기물)</li> <li>• 도로 공사 설계</li> <li>• 도로연결허가</li> <li>• 사후평가용역</li> <li>• 공사관리</li> <li>• 비상계획, 재난, 대테러</li> <li>• 국도ITS, 건설CALs/EC, 도로대장 등 도로정보화 업무</li> <li>• 포장도 보수(PMS) 계획 수립</li> <li>•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관리</li> <li>• 줄음شط터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도로현황 조서 관리</li> <li>• 도로보수현황 자료입력 및 관리</li> <li>•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관리</li> <li>• 도로유지 보수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li> </ul>	건설 교통국  도로 교통과	<p>1) 도로교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총괄</li> <li>• 과 소관 각종 예산업무 총괄</li> <li>•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li> <li>• 자동차 운수사업조합 인가 및 지원·감독</li> <li>• 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등록</li> <li>• 도시교통정비와 교통영향평가업무</li> <li>• 육운 진흥업무 및 자동차 운수사업체 지원·감독</li> <li>• 자동차 전시동원지정에 관한 사항</li> <li>• 여객 및 화물터미널 지원·감독</li> <l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li> </ul> <p>2) 도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 실시계획 추진</li> <li>• 지방도 노선인정·폐지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li> <li>•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li> <li>• 교통소통 해소대책</li> <li>• 군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조정 지원</li> <li>• 농어촌도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사업계획 승인·지원</li> <li>•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계획</li> <li>• 고속국도, 국도, 국도 대체우회 도로 등 도로사업 관련 협의 및 업무협조</li> <li>• 고속국도, 국도 등 도로사업에</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적단속 업무</li> <li>• 시설물유지관리(FMS)</li> <li>•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li> <li>•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CSMS)</li> <li>• 포장보수 폐기물 관련 협약</li> <li>• 접도구역 점검</li> <li>• 재해(설해) 대책</li> <li>• 포장도 보수(PMS) 계획 수립</li> <li>•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관리</li> <li>• 줄음شط터 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도로현황 조서 관리</li> <li>• 도로보수현황 자료입력 및 관리</li> <li>•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관리</li> <li>• 도로유지 보수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li> <li>• 건설사업관리(PQ, 적격심사, 감독 등) 관련 업무</li> <li>• 도로정비심사</li> <li>• 교통사고 10%줄이기 관련 업무</li> <li>•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 (척척서비스)</li> <li>• 장비관리</li> <li>• 차량 및 건설기계 담당</li> <li>• 도로부대시설 관리 및 훼손 원상복구, 특별교통대책</li> <li>• 장비운행</li> <li>• 도로보수 업무</li> <li>• 과적단속 업무</li> <li>• 건설CALS/EC, 도로대장 등 도로정보화 업무</li> <li>• 4, 23, 32, 43호선 도로관리사업 업무</li> </ul>		<p>관련 협의 및 업무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교통량조사</li> <li>• 지방도로사업 지도·점검</li> <li>• 도로현황 조사관리</li> </ul> <p>3) 도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도·위임도로 유지관리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li> <li>• 도로정비 지도·감독</li> <li>• 지방도 수해 예방대책 계획수립 및 방재업무</li> <li>• 접도구역 관리와 지방도 점·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li> <li>• 과적차량 단속 및 관리</li> <li>• 철도건널목개량 종합계획 조정</li> <li>• 전시 도로 긴급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관련(교량, 터널) 연차별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계획</li> <li>•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의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지원·감독</li> <li>• 제한차량 운행 협의 및 허가</li> <li>• 지방도·위임도로 도로표지판 관리</li> <li>• 버스승강장건립사업</li> <li>• 국토교통부(도로) 재산관리 및 지방도 재산 관리 및 용도폐지</li> <li>• 자전거도로관련 업무</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풍수해 업무</li> <li>• 시설물 점검 총괄</li> <li>• 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li> <li>• 관내 터널관련 보수공사(용역) 설계 및 공사관리</li> <li>• 터널 위탁관리 용역 및 직영터널 관리</li> <li>• BSC 성과관리, 검문소 축중기 관리</li> <li>• 직영작업 및 도로시설물 손괴 처리</li> <li>• 도로수해업무</li> <li>• 담당노선(17,36,37,39호선) 시설물관리 및 민원처리</li> <li>• 과적차량 단속업무</li> <li>•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관리, 운행제한차량 협의 및 허가,</li> <li>• 관내 및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업무- 직영터널 및 배수펌프 전기시설물 관련 업무</li> </ul>		
하천관리	하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점용허가 등의 행정처분</li> <li>• 국유재산관련 업무 및 하천관리실태점검</li> <li>• 국가하천내의 소송 관련 총괄</li> <li>• 하천구역 매수청구 총괄</li> <li>• 폐천부지 업무 총괄</li> <li>•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인허가</li> <li>• 공사관리관 및 용역 감독</li> <li>• 국가하천유지관리(3개보, 준설토, 자치단체 보조금 포함)에 관한 사항 총괄</li> <li>•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li> </ul>	<p>환경 녹지국</p> <p>물관리 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평가 관련 업무</li> <li>•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li> <li>•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li> <li>•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안전 심의</li> <li>•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li> <li>•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관리·점검</li> <li>•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공사 업무</li> <li>• 환경관련 업무, 용역 평가기준 작성</li> <li>• 지방하천정비사업 업무</li> <li>• 재해대책 업무</li> <li>• 하천국 하자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량살리기 운동 추진</li> <li>• 도내 수질오염원 조사</li> <li>•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li> <li>• 기타수질오염원 관리</li> <li>•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li> <li>• 지방상수도운영 관리</li> <li>• 광역상수도 관련 업무 및 댐 지원사업</li> <li>•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업무</li> <li>•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li> <li>•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li> <li>• 수해대책 및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li> <li>•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사업</li> <li>• 전용상수도 관리</li> <li>•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수도법에 한함)</li> <li>•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평가</li> <li>• 지하수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li> <li>•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li> <li>• 지하수 오염방지 및 측정망 관리</li> <li>• 먹는 물 관련업 허가 및 관리</li> <li>•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li> <li>•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li> <li>•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li> <li>• 정수기,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li> <li>• 상수도분야 비상대비 업무</li> </ul>
	<p>국토 관리 사무소</p> <p>하천 관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 하천보수원 관리 및 직영작업 업무</li> <li>• 담당구역 하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li> <li>• 하천보수원 관리 및 직영작업 총괄</li> <li>• 하천법 위반행위 단속업무 총괄</li> <li>• 환경관리(수질관리)에 관한 업무</li> <li>• 하천점용 협의 및 검토</li> <li>• 하천사업 및 용역사업 감독(공사관리업무 포함)</li> <li>• 하천관리 계획 및 예산업무</li> <li>• 용역(기본, 실시, 감리, 안전진단, 점검)PQ업무</li> <li>• 하천보수 작업일보 관리</li> <li>• 하천관리과 차량 및 장비관리 업무</li> <li>• 하천순찰 및 시설물 점검</li> </ul>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종합조정</li> <li>하수도사업 인가 관련 업무</li> <li>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및 운영 지원 단속</li> <li>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및 관리</li> <li>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 관리</li> <li>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li> <li>하수도사업 추진 및 관리</li> </ul>
건설관리	관리국 건설 지원과 /보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용역 계약, 국회 등</li> <li>도로계획과 계약관리(공사, 감리, 용역, 폐기물)</li> <li>예산 및 지출 등 경리계 업무</li> <li>예산(예산·결산 국회업무 포함), 지역개발업무 보조</li> <li>공사와 소관 계약(공사, 감리, 문화재, 폐기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li> <li>서천-보령 3공구, 국립생태원-동서천IC, 덕산-고덕IC, 삽교천 신홍지구, 문방지구, 삽교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li> <li>관내 민원</li> <li>보상업무</li> <li>국유재산, 보령-청양1, 음암-성연, 보령-부여</li> <li>계획(예산, 감사, 국회, BSC), 위탁보상 총괄, 염성-용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건설기술심의회 운영</li> <li>부실공사 방지업무 총괄</li> <li>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li> <li>신기술 개발보급 및 활용업무</li> <li>건설업체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li> <li>일반건설업 등록관리(변경)</li> <li>감리업체 등록관리</li> <li>지방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일괄·대안공사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li> <li>건설경기활성화 대책</li> <li>건설기술공무원 교육 업무</li> <li>건설업 관련 행정처분</li> <li>하도급관리</li> </ul>	
	건설 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 부실신고처리(건축) 등</li> <li>점검업무</li> <li>건설관리실 계획주무 업무</li> <li>설계자문, 재난·안전, 품질관리, 품질시험, 각종 점검 등</li> <li>시공실태점검 / 부실별점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교통국</li> <li>건설 정책과</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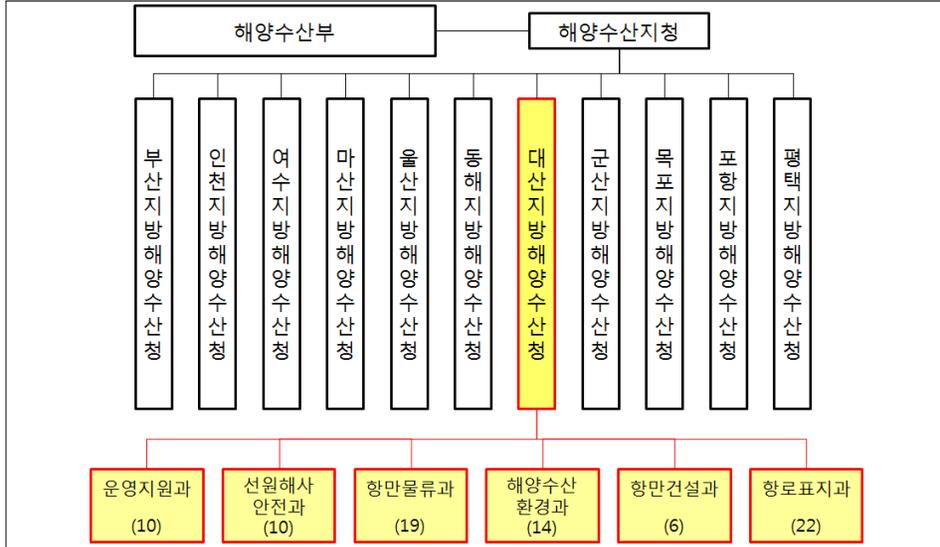
구분 (중기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업무, 재난관리(안전점검의 날, 각종 훈련 등) 업무</li> <li>• 기술자문(심의) 구성 및 운영, 회의자료 및 업무계획, 용역 및 시공평가, 감사, 국회업무 등</li> <li>• 품질검사 전문기관 관련</li> <li>• 건설관리실 시험 및 시험포장 승인 업무</li> </ul>		

#### 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1) 조직 현황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등 3개 시도의 해상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 입출항 선박 관제, 항만시설관리, 수산기술 지도 보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임
  - 항만청장은 일반계약직 4호(4급 상당)로 보하되 임용기간은 2년임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함
  - 2001년 1월부터 지방해양항만청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총무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해양환경과, 항만공사과, 해양교통시설과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현황은 아래와 같음

&lt;그림 3-14&gt;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



자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lt;표 3-23&gt;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 74 명 (본청: 74 명)	50,000 백만원

자료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 2) 수행 기능 현황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운영지원과, 선원해사안전과, 항만물류과, 해양환경과, 항만공사과, 해양교통시설과에서 선원계 업무, 항문국 통제, 해사안전감독, 항만시설 지정, 순찰선 업무, 대산항 순찰 및 개항단속업무, 항만공사 건설, 항로 표지선 등 대호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표 3-24> 대신지방해양수산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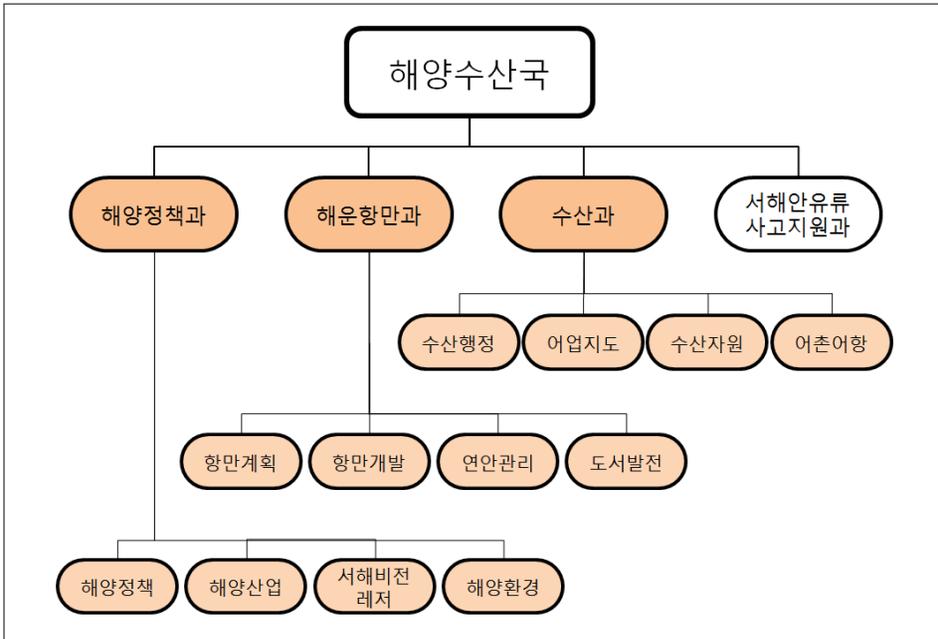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p>운영지원과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업무, 복무, 비상계획, 청렴업무, 청내서무, 기획업무</li> <li>• 국유재산, 물품관리, 관급자재</li> <li>• 계약, 예산</li> <li>• 홍보업무</li> <li>• 회계지출, 국유재산, 물품관리</li> </ul>
<p>선원해사 안전과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무업무</li> <li>• 선박계 업무</li> <li>• 선박구조변경허가, 항만국통제 등</li> <li>• 항만국통제</li> <li>• 해기사업무, 선원공인</li> <li>• 선원근로상담관</li> <li>• 해사안전감독</li> </ul>
<p>항만물류과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항로, 정박지)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li> <li>• 화물연대 등 사회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업무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도선사 수급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항만보안에 관한 사항</li> <li>• 부두운영회사(TOC),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운송(관련)사업, 예선업에 관한 사항, 항만하역요금 인가, 변경인가</li> <li>• 항만시설사용(국가부두) 과내서무 항만운영</li> <li>• 무역항 입출항 업무</li> <li>• 항만운영통계</li> <li>• 항만출입증 발급</li> <li>• 항만종합상황실업무(항만보안,청원경찰,특수경비원 근무감독)</li> </ul>
<p>해양수산 환경과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신항개발사업 업무</li> <li>• 순찰선 업무 총괄</li> <li>•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li> <li>• 해양시설신고 관리</li> <li>•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관리</li> <li>• 무인도서 관리, 선박 수리 및 계선 신고</li> <li>• 공사작업 허가</li> <li>• 해수욕장 관리</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기관운영</li> <li>• 순찰선 선체 유지관리 개항 질서 업무 선박 서류 작성 업무</li> <li>• 청소년 해양교육, 바다의 날 행사, 위험물 반입신고, 개항질서 및 관공선 운영 관리</li> <li>•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해양 폐기물 수거처리</li> <li>• 어업경영체 조사 등록 업무</li> <li>• 대산항 순찰 및 개항단속업무</li> </ul>
항만건설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관할 국가어항 관리</li> <li>• 항만공사 건설 용역업무 및 안전관련 업무</li> <li>• 대산항 개발 업무</li> <li>• 연안정비사업 관련</li> </ul>
항로표지과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기관업무 총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물품(유류)구매 감독관</li> <li>• 항로 표지선 등대호 총괄 업무</li> <li>•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개량공사 추진</li> <li>• 시설항로표지 설치허가 및 관리</li> <li>•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감독</li> <li>• 항로표지선 운항 및 무인표지 점검</li> <li>• 항로표지선 기관업무</li> <li>• 등대호 감관 점검 및 정비</li> <li>• 등대호 선박 각종수당 청구</li> <li>• 전마선 점검 및 정비</li> <li>• 통신장비 관리·운영</li> <li>• 해사안전시설관리, 점검 정비</li> <li>• 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li> <li>• 관공선 통신운영</li> <li>• 옹도 항로표지관리소 근무</li> <li>• 무인표지관리원</li> <li>• 격렬비열도 근무</li> <li>• 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충청남도청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및 해양항만과, 수산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해양수산국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의 해양 및 수산 업무에 대해 충청남도청에서는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은 해양에너지 개발에 관한 업무, 항만계획 및 개발, 연안관리, 수산행정, 어업지도 등을 위해 4개 과 즉, 해양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5> 충청남도청 해양수산국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lt;표 3-25&gt;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선원 해사 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무업무</li> <li>• 선박계 업무</li> <li>• 선박구조변경허가, 항만국통제 등</li> <li>• 항만국통제</li> <li>• 해기사업무, 선원공인</li> <li>• 선원근로상담관</li> <li>• 해사안전감독</li> </ul>	해양수산국  해운 항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li> <li>• 해운물류 정책 업무 추진</li> <li>• 해양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항만인력(노조) 공급체계 관련 사항</li> <li>• 도선사 승·하선 구역 고시</li> <li>• U기반 해운물류시스템 관련 업무</li> </ul>
	항만 물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항로, 정박지)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li> <li>• 화물연대 등 사회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업무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도선사 수급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 항만보안에 관한 사항</li> <li>• 부두운영회사(TOC),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운송(관련)사업, 예선업에 관한 사항, 항만하역요금 인가, 변경인가</li> <li>• 항만시설사용(국가부두) 과내서무 항만운영</li> <li>• 무역항 입출항 업무</li> <li>• 항만운영통계</li> <li>• 항만출입증 발급</li> <li>• 항만종합상황실업무(항만보안,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근무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교통안전 진단에 관한 사항</li> <li>• 선박 및 항로, 정박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항만시설사용전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결산</li> <li>• 예선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li> <li>• 개항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li> <li>• 공사작업, 선박수리, 강제도선면제 등 인 허가</li> <li>•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 관련업무</li> <li>• 입출항신고수리 및 시설사용허가(Port-Mis운영)</li> <li>•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li> <li>•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사항</li> <li>• 해양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수립</li> <li>• 국가관리 무역항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설계 및 감독</li> </ul>
	항만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관할 국가어항 관리</li> <li>• 항만공사 건설 용역업무 및 안전관련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li> <li>• 여객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li> </ul>

구분 (중기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산항 개발 업무</li> <li>연안정비사업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 관한 사항</li> <li>항만구역 및 항로준설에 관한 사항</li> <li>항만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li> <li>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li> <li>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협의</li> <li>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징수</li> <li>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li> <li>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li> <li>연안관리법 제도운영</li> <li>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li> <li>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관리</li> <li>도서발전종합개발사업 추진</li> <li>유·무인도서 이용 개발·보전에 관한 사항</li> <li>도서 여객선 안전운항 시책 수립 및 시행</li> <li>국내항여객운송사업 관리 및 육성 지원</li> <li>도서 여객선 접안시설 증축 및 개축에 관한 사항</li> <li>연안 여객, 화물 등 연안해운·운송 활성화 사업</li> <li>도서별 테마 여가공간 조성 (섬, 등대)</li> </ul>
	항로 표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박 기관업무 총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물품(유류)구매 감독관</li> <li>항로 표지선 등대호 총괄 업무</li> <li>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개량 공사 추진</li> <li>시설항로표지 설치허가 및 관리</li> <li>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감독</li> <li>항로표지선 운항 및 무인표지 점검</li> <li>항로표지선 기관업무</li> <li>등대호 갑판 점검 및 정비</li> <li>등대호 선박 각종수당 청구</li> <li>전마선 점검 및 정비</li> <li>통신장비 관리.운용</li> <li>해사안전시설관리, 점검 정비</li> <li>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li> <li>관공선 통신운영.</li> <li>옹도 항로표지관리소 근무</li> <li>무인표지관리원</li> <li>격렬비열도 근무</li> <li>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li> </ul>		
해양보전	해양 수산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산항개발사업 업무</li> <li>순찰선 업무 총괄</li> <li>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li> <li>해양시설신고 관리</li> <li>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 수산국</li> <li>해양 정책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생태계보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li> <li>연안습지 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li> </ul>

구분 (중기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인도서 관리, 선박 수리 및 계선 신고</li> <li>공사작업 허가</li> <li>해수욕장 관리</li> <li>선박기관운영</li> <li>순찰선 선체 유지관리 개항 질서 업무 선박 서류 작성 업무</li> <li>청소년 해양교육, 바다의 날 행사, 위험물 반입신고, 개항질서 및 관공선 운영 관리</li> <li>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 평가 대행자 등록,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li> <li>어업경영체 조사 등록 업무</li> <li>대산항 순찰 및 개항단속업무</li> </ul>		<p>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항</li> <li>해양환경보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li> <li>서해안 연안환경 통합관리계획에 관한 사항</li> <li>해양폐기물처리, 해역이용 협의, 해양시설 관리</li> </ul>
			<p>해양수산물수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li> <li>불법 어업단속(해면, 내수면)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수립 추진</li> <li>어로시설 사업 및 수산기자재 지원 및 관리</li> <li>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li> <li>어업인교육, 어선관리 및 안전조업 지도·감독</li> <li>수산재해 예방대책 및 피해조사 보고</li> <li>어로시설 및 어구·어망 피해복구</li> <li>방치 폐어선 관리</li> <li>출어선 조업현황 파악 및 보고</li> <li>자율관리어업 육성지도 및 관리</li> <li>근해어업 허가 및 연안어업 허가, 어획물 운반업 등록, 어업신고 등 지원 관리</li> <li>어업협정에 관한 사항 (주변국과의 입어협정)</li> <li>해면 수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li> <li>바다낚시업무에관한 사항</li> <li>어선어업관련 피해분쟁 및 조정</li> <li>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li> <li>어업면허, 구획어업허가, 육상</li> </ul>

구분 (중기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양식 및 종묘생산업 관리 • 해면·내수면 증양식 개발사업 지원 • 해면어업권 및 내수면어업 피해보상 및 분쟁조정 •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추진 •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 • 수산 증양식 피해복구 • 적조대책 • 육성수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정화 정비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목장화 사업추진 및 관리 • 수산동식물이식승인 및 질병 관리 • 내수면 및 해면양식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사항 • 양식수산물의 출하조정 및 위생에 관한 사항 • 양식분야 인력수급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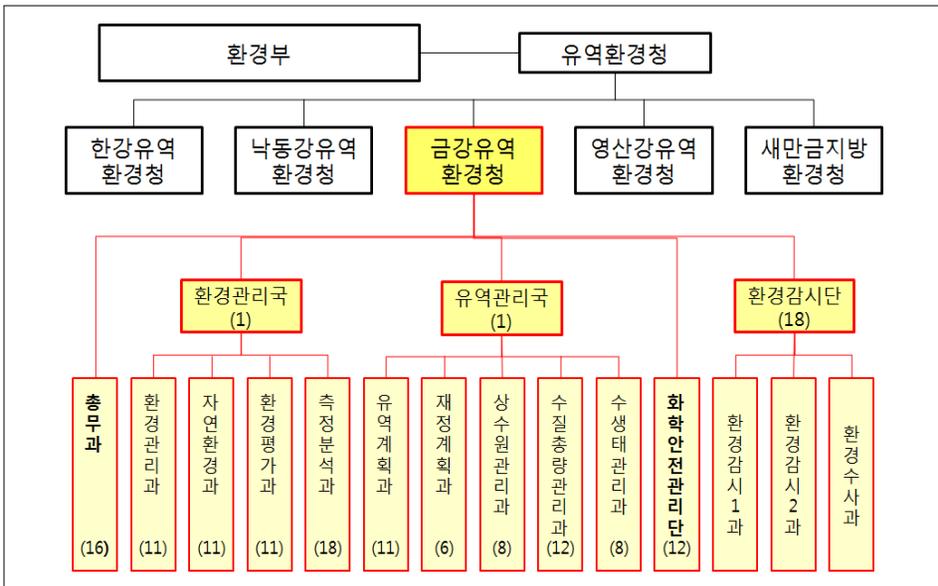
아. 금강유역환경청

1) 조직 현황

-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 유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자원순환형 사회구현,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 등 지역 환경보전 정책추진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임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함
  - 금강유역환경청의 관할 구역은 대전광역시의 5개 구(중구,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의 8개 시(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당진시)와 7개 군(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및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6개 군(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증평군) 등임
- 금강유역환경청은 청장 직할의 총무과와 환경관리국 내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화학물질관리과, 측정분석과, 유역관리국 내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도와 인력 및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음

<그림 3-16> 금강유역환경청 조직



자료: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주: ( )은 담당 인력 수

<표 3-26> 금강유역환경청 인력 및 예산

구분	인력	예산
금강유역환경청	총 97명 (본청: 93, 하부조직: 4)	665,394 백만원

자료 : 금강유역환경청 내부 자료

주 : 2016년 기준

## 2) 수행 기능 현황

○ 금강유역환경청의 각 조직 구성과 업무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환경관리국, 유역관리국, 환경감시단에서 금강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수계관리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관리,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자연생태계 보호, 지정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상수원오염행위, 오염의심지역 감시·단속, 환경질측정망 설치·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27> 금강유역환경청 조직 구성 및 사무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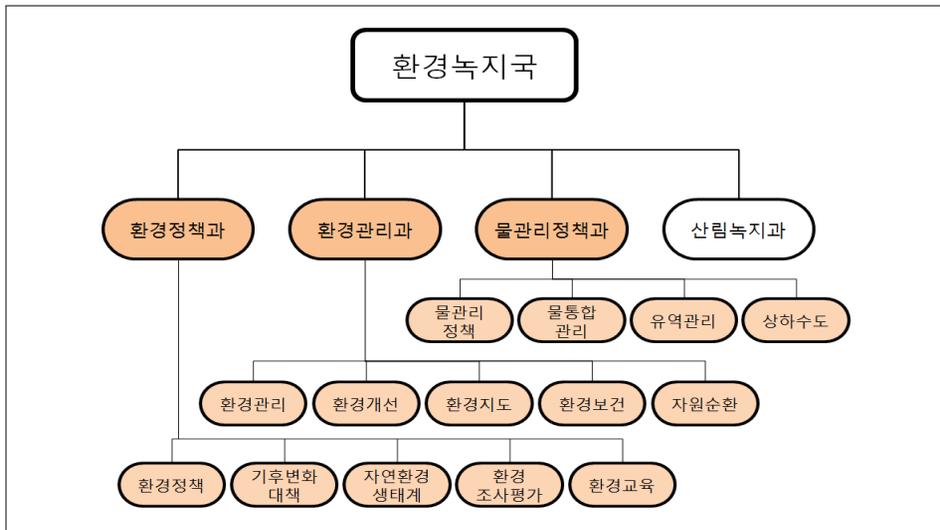
조직구분	업무분장
총무과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무, 인사, 보안업무, 청사관리</li> <li>•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li> </ul>
환경관리국 (1)	환경관리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관리</li> <li>• 환경산업체 관리</li> </ul>
	자연환경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 보전지역 보전·관리</li> <li>• 특정도서 및 생태계 변화 관찰지역 모니터링 실시</li> <li>• (국제적)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및 포획·채취 허가 등</li> </ul>
	환경평가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li> <li>• 사전환경성 검토협의</li> <li>• 사후관리</li> <li>•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등</li> </ul>
	측정분석과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및 토양측정망 운영</li> <li>• 측정 및 점검시료의 시험·분석</li> <li>• 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li> </ul>

조직구분		업무분장
유역 관 리 국 (1)	유역계획과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li> <li>• 수질오염원 조사 등 환경기초조사연구</li> <li>• 수계관리위원회 운영</li> <li>• 주민지원사업</li> <li>•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교육</li> </ul>
	재정계획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 및 자금배정</li> <li>- 물이용부담금 관련업무</li> </ul>
	상수원관리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사후관리</li> <li>• 수변구역의 관리</li> <li>• 상수원 보호구역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li> </ul>
	수질총량관리과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li> <li>•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li> <li>•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li> <li>•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승인</li> <li>•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수생태관리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예보제 운영</li> <li>• 대청호·보령댐 조류경보제 운영</li> <li>•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li> <li>•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li> <li>• 금강환경지킴이 운영</li> <li>•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관리</li> <li>• 하천오염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li> </ul>
화학안전관리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li> <li>•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li> <li>• 화학테러 등</li> </ul>	
환경감시단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li> <li>• 환경사범에 대한 사범수사</li> <li>• 환경컨설팅 운영</li> </ul>	

### 3) 지자체와 기능 비교 현황

-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남도청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환경관리과·물관리정책과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환경녹지국의 조직도와 기능 중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강유역 관리 업무는 충청남도청에서는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녹지국은 도내 환경정책, 환경관리, 물관리, 산림녹지관리 등을 위해 4개 과 즉,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물관리정책과, 산림녹지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7> 충남도청 환경녹지국 조직도



자료: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lt;표 3-28&gt; 금강유역환경청과 자치단체의 기능 비교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환경관리	환경 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관리</li> <li>환경산업체 관리</li> <li>생태계 보전지역 보전·관리</li> <li>특정도서 및 생태계 변화 관찰 지역 모니터링 실시</li> <li>(국제적)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및 포획·채취 허가 등</li> <li>환경영향평가</li> <li>사전환경성 검토협의</li> <li>사후관리</li> <li>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등</li> <li>대기 및 토양측정망 운영</li> <li>측정 및 점검시료의 시험·분석</li> <li>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녹지 관련 단체 협조·협력 총괄</li> <li>환경녹지실태 정책지표 설정운영</li> <li>환경보전증장기종합계획수립</li> <li>환경분야 비영리법인 허가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 추진</li> <li>녹생활 공감환경소식지 발간</li> <li>도의회 및 국회관련 업무지원</li> <li>정부합동평가 업무관리</li> <li>과내 예산의 편성 및 지출</li> <li>중국 강소성 및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환경 교류업무</li> <li>녹색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촉진관련 업무</li> <li>환경분야 부패방지대책 수립·추진</li> <li>환경정책위원회 운영·관리</li> <li>환경의날 행사 및 환경공무원 연찬회 추진</li> <li>녹색성장위원회 및 포럼운영</li> <li>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관리</li> <li>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 지원</li> <li>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관리</li> <li>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li> <li>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관리</li> <li>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 관리</li> <li>기후변화 국고 테마사업 추진관리</li> <li>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li> <li>지속가능 발전 통합 환경관리 업무</li> <li>녹색성장위원회 및 포럼위원 관리</li> </ul>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화학 안전 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li> <li>•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li> <li>• 화학테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관리</li> <li>•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li> <li>• 도농복합형 에너지 녹색마을 조성사업</li> <li>• 지방의제21 추진 및 추진 기구 관리</li> <li>•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운영</li> <li>•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li> <li>• 탄소다이어트 및 탄소중립형 행사 추진관리</li> <li>•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관리</li> <li>• 배출권거래제 운영관리</li> <li>•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li> <li>•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추진</li> <l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관련 업무</li> <li>•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업무</li> <li>•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관리</li> <li>• 환경오염피해영향 등 조사·분석 관리</li> <li>•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측정망 조사·분석</li> <li>• 각종 개발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성평가 협의</li> <li>•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허용기준 관리</li> <li>• 사전환경성검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li> <li>•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운영</li> <li>• 교육청 등 환경교육 거버넌스 추진</li> <li>•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li> </ul>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환경 감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원 오염행위 단속</li> <li>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수사</li> <li>환경건설링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환경교육성과분석 및 평가</li> <li>민간 환경단체 환경교육사업 지원</li> <li>환경교육 연계사업 추진 및 지원</li> <li>환경교육 DB구축 및 콘텐츠 개발</li> <li>환경교육 관련기관 협력업무 추진</li> <li>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홍보, 연구개발, 네트워크 운영</li> </ul>
			환경 녹지국  환경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li> <li>개발사업의 환경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및 협의</li> <li>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li> <li>중부권 환경성질환경예방관리 센터 건립추진</li> <li>대기 및 소음환경측정망 운영</li> <li>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등 인허가 관리</li> <li>대기, 수질, 소음진동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관련 업무</li> <li>대기, 수질, 유독물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 관련 업무</li> <li>대기, 수질,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관련 업무</li> <li>환경건설링회사 등록 관련업무</li> <li>폐수수탁처리업 등록 관련 업무</li> <li>대기오염배출원 조사</li> <li>미세먼지, 오존, 황사 경보제 운영</li> <li>약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관리</li> <li>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li> <li>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징수</li> <li>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관련 업무</li> <li>CNG 버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등</li> </ul>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독성 및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li>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 시행</li> <li>•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li> <li>• 영세배출업소 기술지도사업 추진</li> <li>• 배출업소 자체개선계획 및 부적정 운영신고 사업장 관리</li> <li>•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li> <li>• 비산먼지 및 배출시설 악취관리</li> <li>• 환경신문고(128전화, 인터넷) 운영</li> <li>• 대기·수질 자동측정기기(TMS)관리</li> <li>• 자체개선계획 및 부적정 운영신고 사업장 관리</li> <li>•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li> <li>•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지원</li> <li>• 영세배출업소 기술지도</li> <li>• 폐기물처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사업장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관리</li> <li>• 생활폐기물 종량제 관리 업무</li> <li>• 국토대청결 운동사업 추진</li> <li>•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EPR) 관련 업무</li> <li>• 지정폐기물 관리</li> <li>•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li> <li>• 폐기물 신재생 에너지화 추진</li> <li>• 쓰레기 관련 민원 처리</li> <li>• 금강하구 쓰레기 분담처리 관리</li> <li>•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 관리</li> <li>•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li> </ul>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및 지도관리</li> <li>소각시설 및 폐기물계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li> <li>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li> <li>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li> </ul>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유역 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li> <li>수질오염원 조사 등 환경기초조사연구</li> <li>수계관리위원회 운영</li> <li>주민지원사업</li> <li>환경보전에 관한 홍보교육</li> <li>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사후관리</li> <li>수변구역의 관리</li> <li>상수원 보호구역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li> <li>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li> <li>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li> <li>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li> <li>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승인</li> <li>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수질예보제 운영</li> <li>대청호·보령댐 조류경보제 운영</li> <li>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li> </ul>	환경 녹지국 물관리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강정비사업 이후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추진</li> <li>수질측정망 운영</li> <li>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li> <li>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및 재난 관리</li> <li>토양오염 대책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li> <li>(구)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대책 추진</li> <li>물 관리 정책협의회(수계별 포함) 운영</li> <li>통합 수질개선 방안 마련</li> <li>물 통합관리 중장기 종합계획</li> <li>환경부지정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li> <li>담수호 및 저수지 호내 수질 분석 및 개선</li> <li>수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계획 수립</li> <li>수자원 수급 및 향후 전망 진단·분석 관리</li> </ul>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p>감사업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li> <li>•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li> <li>• 금강환경지킴이 운영</li> <li>•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관리</li> <li>• 하천오염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li> <li>•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수급(조사) 및 전망 대책 추진</li> <li>• 하천수 조정협의회, 댐과 보 연계 운영협의회 운영</li> <li>• 하천수 사용, 관리·조정 등에 관한 업무추진</li> <li>•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li> <li>•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평가 관련 업무</li> <li>•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li> <li>•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li> <li>•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안전 심의</li> <li>•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li> <li>•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관리·점검</li> <li>•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li> <li>• 도량살리기 운동 추진</li> <li>• 도내 수질오염원 조사</li> <li>•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li> <li>• 기타수질오염원 관리</li> <li>•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li> <li>• 지방상수도운영 관리</li> <li>• 광역상수도 관련 업무 및 댐 지원사업</li> <li>•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업무</li> <li>•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li> <li>•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li> <li>• 수해대책 및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li> </ul>

구분 (중기능)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	
	조직	업무(단위 사무)	조직	업무(단위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사업</li> <li>• 전용상수도 관리</li> <li>•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관리(수도법에 한함)</li> <li>•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평가</li> <li>• 지하수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추진</li> <li>•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업무</li> <li>• 지하수 오염방지 및 측정망 관리</li> <li>• 먹는 물 관련업 허가 및 관리</li> <li>•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li> <li>•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li> <li>•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li> <li>• 정수기, 수처리제 관련업 신고 및 사후관리</li> <li>• 상수도분야 비상대비 업무</li> <li>•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종합조정</li> <li>• 하수도사업 인가 관련 업무</li> <li>•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 및 운영 지원 단속</li> <li>•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 관리</li> <li>•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li> <li>• 하수도사업 추진 및 관리</li> </ul>

### 제3절 종합적 분석

-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별로 충청남도청 해당 조직의 담당 기능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바는 다음과 같음

<표 3-29>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기능 비교 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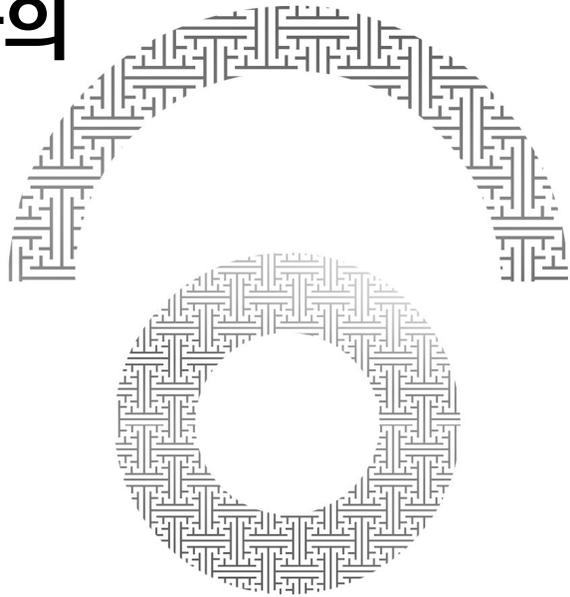
특별지방행정기관	충청남도청 해당 조직	기능 비교 분석 결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기업통상교류과 ·전략산업과	기업지원·자금지원·통상지원 기능 전 반에 걸쳐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천안고용노동지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고용정책·노동정책·노동복지 기능 전 반에 걸쳐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령고용노동지청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고용정책·노동정책·노동복지 기능 전 반에 걸쳐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심판기능·조정기능·정책기능 중 조정· 정책 기능 관련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전지방보훈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 /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과	유공자 등록 및 보상지원·복지지원·제 대군인 지원 기능 중 복지지원 기능 관 련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	도로시설·하천관리·건설관리 기능 전 반에 걸쳐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해양항만과· 수산과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해양보전 기능 전반에 걸쳐 유사 업무를 수행하 고 있음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환경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관리·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제4장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정비 방안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전략





## 제4장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 제1절 분석모형

## 1. 분석 대상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분석할 대상은 제주도에서 기이양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들로 우선 선정함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고용노동지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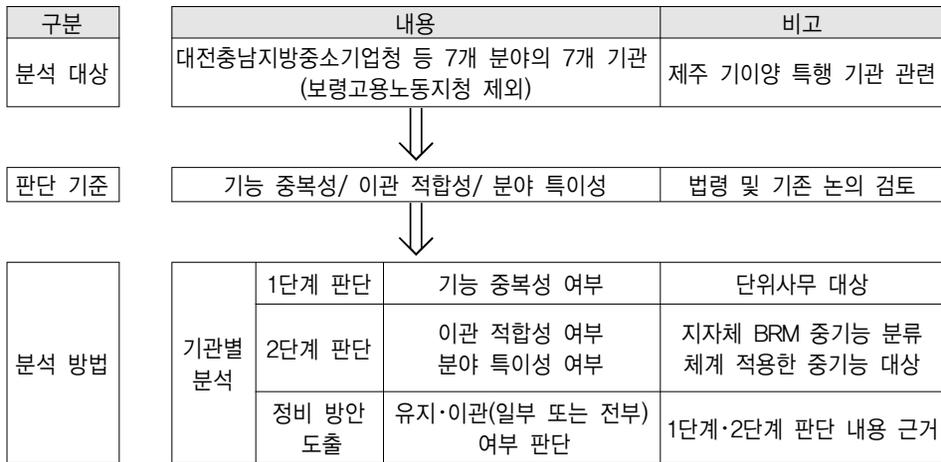
<표 4-1> 충남 이양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기관명	주요 기능	소재지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	대전
고용노동부(천안지청)	고용창출, 고용지원	천안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사간 이익, 권리분쟁 해결	대전
대전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지원	대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국도건설관리, 국가하천 정비	대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기반시설 확충	서산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 수질개선 추진	대전

## 2. 분석 방법

- 충청남도 지방이양 대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그림 4-1> 분석 방법



## 3. 판단 기준

### 가. 기존 논의 분석

#### 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원칙<sup>8)</sup>

-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원칙은 특별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데 따른 원칙을 말하며,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 배부 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지방분권법)」에 근거하고 있음

8) 양영철. (200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k제23 권 제2호(통권77호)

&lt;표 4-2&gt;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법적 사무배분 기준

법령	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약칭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li> <li>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li> <li>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li> <li>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li> </ol>

○ 이같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양영철(2009)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을 중복 배제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이관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중복 배제의 원칙에 관해, 「지방분권법」 제9조 1항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복배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무의 중복행정으로 인하여 예산 및 인력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두 기관 간의 대립

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은 이러한 중복행정을 없애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보충성의 원칙에 관해, 「지방분권법」 제9조 2항은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분권을 통한 수직적 권력분립(vertical division of power)를 확립하여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는 원칙을 의미함(이기우·하승수, 2008)
  - 포괄적 이관의 원칙에 관해서는, 「지방분권법」 제9조 1항은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무 배분은 포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 포괄적 이관 방식은 일괄적 이관, 총괄적 이관이라고도 하는데, 개별적 이관방식은 종합행정의 의미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임
- 진재구(1999)는 사무의 특성 즉, 사무의 전문성 여부, 정책집행 대상 구분의 명료성 여부, 정책대상집단의 특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사무배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lt;표 4-3&gt;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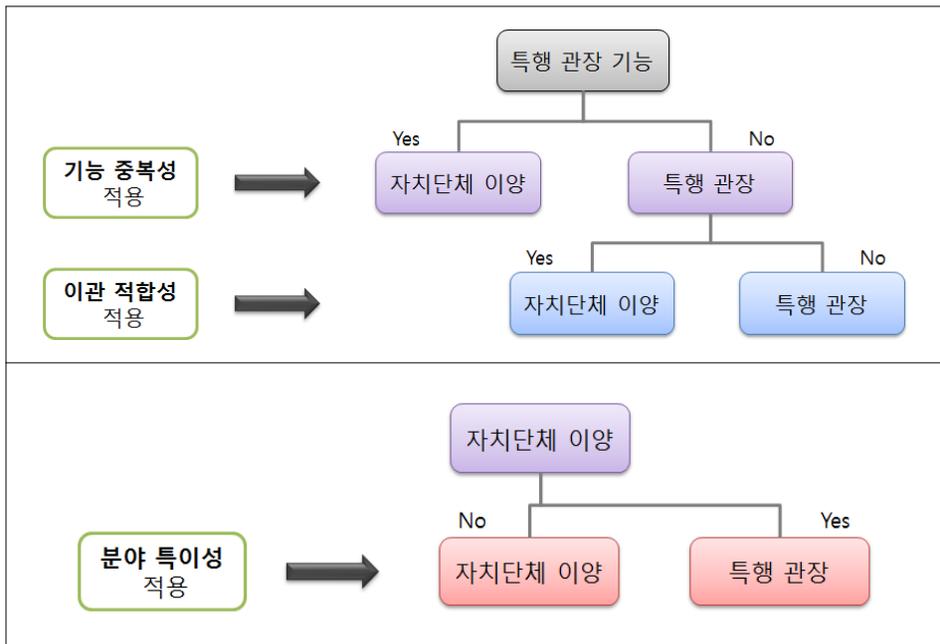
분야	현행법상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구분 의 명료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집행대 상 구분의 명료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정향의 배치여부	사무의 일반성 전문성 여부/정책집행 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확보의 가능성	여타부문과의 관련성/독립성	관할구역 혹은 정책대상집 단의 일반성 특수성
노동행정	국가사무	동일	일치	일반적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련	일반성
산림관리	국가사무 / 자치사무	불명료	일치	일반적	소방·방재업무 와 관련	일반성
중소기업 지원	자치사무	동일	일치	일반적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노동 정책과 관련	일반성
환경행정	국가사무 / 지방사무	동일	일부배치	일부 전문적	수자원개발·산 업진흥·농축산 업 등과 밀접한 관련	일반성
식품의약 품안전	국가사무	불명료	일치	일부 전문적	산업정책과 일부 관련	일반성

- 금창호 외(2012)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관 기능의 판단 기준으로 기능 중복성, 이관 적합성, 분야 특이성의 3가지를 제시하였음
- 3개의 판단기준에서 기능중복성과 이관적합성은 이관가능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분야특이성은 이관회피 판단기준으로 활용함(아래 <표 4-4> 참고)
  - 기능분류트리의 방법을 적용하여 기능중복성과 이관적합성 및 분야특이성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최종적인 이관여부를 판단함(아래 <그림 4-2> 참고)

<표 4-4> 기능이관의 판단기준

판단기준	측정지표
기능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목적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히 처리하는 기능</li> <li>중앙과 지방의 동일한 사무</li> </ul>
이관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능</li> <li>파급효과가 전국적이 아닌 사무</li> <li>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지방자치단체의 기존기구로 수행 가능한 사무</li> <li>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li> </ul>
분야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 효율성 이외의 특행별 존립가치에 해당되는 기능</li> <li>업무특성상 특행준치가 요구되는 사무</li> <li>수요특성상 특행준치가 요구되는 사무</li> </ul>

<그림 4-2> 판단기준의 적용방법



## 나. 적용 기준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금창호 외(2012)의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판단기준 적용방식을 기존과 차별화하여 단위사무(소기능)와 중기능을 대상으로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자 함
  - 1단계에서는 단위 사무(소기능)을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2단계에서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이관 적합성’과 ‘분야 특이성’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1단계 적용 기준인 기능 중복성 여부 즉,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무를 중복적으로 행하는지의 여부는 「지방분권법」 제9조에서 제시된 원칙으로 법률상에서 언급한 바와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단계 적용 기준인 이관 적합성과 분야 특이성은 이론상 제시되는 원칙으로 이관 적합성은 주민의 접근성과 현지 적합성 등의 특성이 높은지 여부로 판단하고, 분야 특이성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전문성이 없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단위 사무보다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3> 본 연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판단기준

단계	판단기준	측정지표	분석 대상
1단계 판단	기능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목적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히 처리하는 기능</li> <li>- 중앙과 지방의 동일한 사무</li> </ul>	단위 사무
↓			
2단계 판단	이관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능</li> <li>- 파급효과가 전국적이 아닌 사무</li> <li>-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의 기존기구로 수행 가능한 사무</li> </ul>	중기능

단계	판단기준	측정지표	분석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	
	분야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효율성 이외의 특행별 존립가치에 해당되는 기능</li> <li>-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li> </ul>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여부의 최종 판단

##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별 정비 방안

### 1. 대전충남중소기업청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5> 대전충남중소기업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기업지원	• 지역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집행계획 수립	○	
	•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	
	•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실험실창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및 신기술창업 인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역 창업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신기술 창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	
	• 창업자의 법인 설립 및 공장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지도 및 감독	○	
	• 지역 창업자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	
	•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졸업예정 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	○	
	•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리	○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	
	•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관한 사항	×	
	• 공공구매제도 위반사항의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	×	
	• 공공기관 구매지원담당자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지역 장애인기업·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의 운영	○	
	•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	
	• 기업경영 상담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기업애로 접수·처리 및 상담전문기관 전문가 중개에 관한 사항	○	
	• 지역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원회 개최 및 자문 위원 관리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지역 내 중소기업 읍부즈만 공청회 개최	×	
	•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시책 및 동향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고충민원 및 애로·건의사항의 청취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또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의 건의	○	
	•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	○	
	•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 거래조사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	×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기업과 공업고등학교 간 연계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 실태조사 및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 지역 산업체·인력공급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지역 중소기업 간 채용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 재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재래시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신청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 공산품 및 공업재료의 시험·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	
	• 계량·계측기의 교정에 관한 사항	×	
	• 시험방법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	
	•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	×	
	• 시험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지방중소기업청 보유 장비의 이용 개방에 관한 사항	×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조사에 관한 사항	×	
	• 연구 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사항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중소기업의 기술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환경관련 국제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산학협력실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대학·연구소 등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방지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 지방중소기업청 연구개발 과제 및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협의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	○	
	•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	
	•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	○	
	자금지원	• 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금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지역금융지원위원회의 운영		○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 관련 각종 간담회의 개최 및 운영		○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의 확인에 관한 사항		○	
•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	
• 중소기업의 부담금·보조금 및 세제 지원과 그 안내에 관한 사항		○	
통상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 수출기업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	
	• 해외시장 개척인력의 선정 및 현장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 해외규격 인증 획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이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6> 대전충남중소기업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기업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기능은 구체적인 지원 수단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상당부분 충남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임</li> <li>- 충남도청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창업정신 고양 등의 사무는 청년인턴십 사업 또는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 등에 포함시켜 수행 가능함</li> <li>-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우선공급 추천에 관한 사무도 충남도청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주민 편의성과 현지성의 측면에서 지자체 이관이 바람직함</li> <li>- 중소기업 읍부즈만 관련 사무는 기존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활동과 관련하여 수행가능하며 지자체가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무임</li> <li>- 국제규제 대응 관련 지원 사무도 다소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나 현재 충남도청이 수행하는 통상지원 사무와 연계하여 충분히 수행 가능함</li> <li>- 시험연구지원 사무는 다소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고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므로 분야 특이성이 인정됨</li> <li>- 충남도청에서도 공공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구매 위반 사항 확인 등의 사무는 분야 특이성이 인정됨</li> <li>- 수·위탁거래 등 불공정거래 조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수행근거가 없어 분야 특이성이 인정됨</li> </ul>

증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자금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원 관련 사무는 충남도청에서 이미 상당부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통상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지원 관련 사무는 충남도청에서 이미 상당부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표 4-7> 대전충남중소기업청 대상 정비 방안

증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기업지원		○		-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과 이관 적합성이 높으나 일부 사무(불공정 거래 조사, 시험연구지원, 공공구매 위반 사항 확인)의 경우 분야 특이성 존재
자금지원			○	-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적합성 존재
통상지원			○	- 대전충남중소기업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 2.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천안 기준)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천안고용노동지청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8> 천안고용노동지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고용정책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업무	○	
	• 지역 일자리공시제 업무	○	
	• 고용형태공시제 관련 업무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포함)	○	
	•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	○	
	• 대량고용변도 신고 관련 업무	×	
	•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	○	
	• 허위구인광고 지도 및 단속	×	
	•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직 확인	×	
	•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	
	•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	
	• 직업진로지도 업무	○	
	•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	
	• 청년 창직인턴제,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관련 업무	○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련 업무, 장년취업 인턴제	○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	
	• 취업알선, 구인·구직 관련 업무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워크넷상 구인·구직 개척 및 상설채용관(채용지원 서비스) 운영	×	
	• 구직급여 지급 및 착오지급액 환수 업무	×	
	• 수급자 재취업지원 관련 업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업무	×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업무	×	
	• 고용안정사업(각종 지원금 지급)	○	
	•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등)	×	
	• 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실업자) 업무	○	
	• 제외제(실업자)카드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카드 발급 등	○	
노동정책	•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	×	
	• 사업장 근로감독	○	
	• 노동행정종합지원서비스	×	
	• 노사협의회 운영	○	
	• 체불임금청산 업무	×	
	•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 복지기금 관련 업무	×	
	• 퇴직연금, 퇴직공제 관련 업무 등	○	
	•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 및 관련 신고사건 처리	×	
	• 노동시장 T/F 운영	×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지도	○	
	•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	○	
	•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업무 등	○	
	•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처리	×	
	• 장애인, 고령자 고용 지도	○	
• 여성고용, 적극적 고용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관련 업무	○		
•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관련 업무	○		
• 성희롱예방교육	○		
근로자 복지	•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관련 업무	○	
	•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도	○	
	• 산재 취약계층 관리 및 산재 은폐 조사	○	
	•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등 관련 업무	○	
	• 건설재해 예방	○	
	• 유해 화학물질 관련 지도	○	
	• 산업보건 관련 업무 등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9> 천안고용노동지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고용정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고용노동지청의 고용정책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상당부분 충남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이며, 현지성이 높아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노동정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개선 지도 업무 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의 처리 등의 사무의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분야 특이성이 존재함</li> <li>- 반면, 단순 지도 업무는 충남도청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로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ul>
근로자복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재 예방 및 근로자 건강 관리 등 근로자 복지 업무는 충남도청에서 수행 가능한 사무이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천안고용노동지청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표 4-10> 천안고용노동지청 대상 정비 방안

중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고용정책			○	-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노동정책		○		-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 일부 사무(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처리 등의 특별사법경찰업무)의 경우 분야 특이성이 존재
근로자복지			○	-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심판기능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	
	• 노사간 권리분쟁에 대한 판정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노동부 행정행위의 사전 의결	×	
	•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	
조정기능	•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긴급 조정	×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	
정책기능	• 근로조건 개선 권고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심판기능	×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관련 법상 지자체에 수행권한이 없고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기능이므로 분야 특 이성이 존재
조정기능	×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은 관련 법상 지자체에 수행권한이 없고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기능이므로 분야 특 이성이 존재
정책기능	○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정책기능은 관련 법상 지자체에 수행권한이 없으나 근로 조건 개선 권고 업무는 현지성의 측면 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

####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표 4-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상 정비 방안

중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심판기능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분야 특이성이 존재
조정기능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은 분야 특이성이 존재
정책기능		○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정책기능은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이 존재 -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권한 부여

#### 4. 대전지방보훈청

#####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대전지방보훈청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4> 대전지방보훈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보훈 선양	• 보훈단체 관리 지원	○	
	• 현충시설 건립·관리	○	
	• 나라사랑교육	○	
	• 홍보, 행사지원	○	
	• 독립유공자포상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취업알선	×	
	• 교육지원	×	
	• 취업수강료, 취업증명	×	
	• 취업상담사	×	
등록 및 보상	• 국가유공자 등록	×	
	• 유족 등록	×	
	• 고엽제등록	×	
	• 증명발급	×	
	• 생활수준조사, 신상변동	×	
	• 보상금	○	
	• 참전담당	○	
복지 지원	• 행정소송	×	
	• 의료담당	○	
	• 대부담당	×	
	• 차량, 보철구 담당	○	
	• 노후복지	○	
제대군인 지원	• 보훈복지사 및 이동보훈팀 운영 지원	×	
	• 제대군인 취업상담 및 경력설계	×	
	• 제대군인 적합직종 발굴	×	
	• 교육훈련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대전지방보훈청이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lt;표 4-15&gt; 대전지방보훈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보훈 선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단체 관리·지원, 현충시설 건립·관리, 나라사랑교육, 홍보 및 포상 등의 사무는 현재 충남도청에서 유사·중복 사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취업알선 및 교육 등의 사무도 일자리부서에서 수행 가능함</li> <li>- 또한 보훈 선양 기능은 주민 편의성과 현지성 측면에서도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등록 및 보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유공자 등록 관련 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분야 특이성이 인정됨</li> <li>- 각종 보훈 행사 및 나라사랑교육 등은 상당부분 충남도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있음</li> <li>-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 수준 조사, 보상금 지원 등의 사무는 충남도청에서 수행 가능하며 주민 편의성과 현지성의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있음</li> </ul>
복지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지원 관련 사무는 충남도청에서 이미 상당부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제대군인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청에서 현재 제대군인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수행하는 취업 지원 사무에 포함시켜 수행 가능하며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ul>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대전지방보훈청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표 4-16> 대전지방보훈청 대상 정비 방안

중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보훈 선양			○	- 대전보훈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등록 및 보상		○		- 대전보훈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과 이관 적합성이 존재하나 일부 사무(유공자 등록 사무)의 경우 분야 특이성 존재
복지 지원			○	- 대전보훈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제대군인 지원			○	- 대전보훈지청과 충남도청 간에 이관 적합성 존재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lt;표 4-17&gt;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도로시설	• 도로계획 관련 계약관리(공사, 감리, 용역, 폐기물)	○	
	• 도로 공사 설계	○	
	• 도로연결허가	×	
	• 공사관리	○	
	• 비상계획, 재난, 대테러	○	
	• 국도ITS, 건설CALS/EC, 도로대장 등 도로정보화 업무	○	
	• 시설물유지관리(FMS)	○	
	•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 및 관련업무	○	
	•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CSMS)	○	
	• 포장보수 폐기물 관련 협약	○	
	• 접도구역 점검	○	
	• 재해(설해) 대책	○	
	• 포장도 보수(PMS) 계획 수립	○	
	•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 어린이(노인) 보호 구역 관리	○	
	• 줄음شط터 계획 수립 및 시행	○	
	• 도로현황 조서 관리	○	
	• 도로보수현황 자료입력 및 관리	○	
	•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관리	○	
	• 도로유지 보수 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	
	• 건설사업관리(PQ, 적격심사, 감독 등) 관련 업무	○	
	• 도로정비심사	○	
	• 교통사고 10%줄이기 관련 업무	○	
	• 도로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척척서비스)	○	
	• 차량 및 건설기계 담당	○	
	• 도로부대시설 관리 및 훼손 원산복구, 특별교통대책	○	
	• 장비관리·장비운행	○	
	• 도로보수 업무	○	
• 과적단속 업무	○		
• 건설CALS/EC, 도로대장 등 도로정보화 업무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4, 23, 32, 43호선 도로관리사업 업무	×	
	• 도로풍수해 업무	○	
	• 시설물 점검 총괄	○	
	• 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 관내 터널관련 보수공사(용역) 설계 및 공사관리	×	
	• 터널 위탁관리 용역 및 직영터널 관리	×	
	• 직영작업 및 도로시설물 손괴 처리	○	
	• 도로수해업무	○	
	• 담당노선(17,36,37,39호선) 시설물관리 및 민원처리	×	
	• 과적차량 단속업무	○	
	•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관리, 운행제한차량 협의 및 허가	○	
	• 관내 및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업무- 직영터널 및 배수펌프 전기시설물 관련 업무	×	
	하천관리	• 하천점용허가 등의 행정처분	○
• 국유재산관련 업무 및 하천관리실태점검		○	
• 국가하천내의 소송 관련 총괄		○	
• 하천구역 매수청구 총괄		○	
• 폐천부지 업무 총괄		○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인허가		○	
• 공사관리관 및 용역 감독		○	
• 국가하천유지관리(3개보, 준설토, 자치단체 보조금 포함)에 관한 사항 총괄		×	
•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		○	
• 도로공사 업무		○	
• 환경관련 업무, 용역 평가기준 작성		○	
• 지방하천정비사업 업무		○	
• 재해대책 업무		○	
• 하천국 하자관련 업무		○	
• 재해, 하천보수원 관리 및 직영작업 업무		○	
• 담당구역 하천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 하천보수원 관리 및 직영작업 총괄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하천법 위반행위 단속업무 총괄	○	
	• 환경관리(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	
	• 하천점용 협의 및 검토	○	
	• 하천사업 및 용역사업 감독(공사관리업무 포함)	○	
	• 하천관리 계획 및 예산업무	○	
	• 용역(기본, 실시, 감리, 안전진단, 점검)PQ업무	○	
	• 하천보수 작업일보 관리	○	
	• 하천관리과 차량 및 장비관리 업무	○	
	• 하천순찰 및 시설물 점검	○	
건설관리	• 도로계획과 계약관리(공사, 감리, 용역, 폐기물)	○	
	• 예산(예산·결산 국회업무 포함), 지역개발업무 보조	○	
	• 공사와 소관 계약(공사, 감리, 문화재, 폐기물),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	
	• 하천환경정비사업	○	
	• 관내 민원	○	
	• 보상업무	○	
	• 국유재산, 보령-청양1, 음암-성연, 보령-부여	×	
	•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 부실신고처리(건축) 등	○	
	• 점검업무	○	
	• 건설관리실 계획주무 업무	○	
	• 설계자문, 재난·안전, 품질관리, 품질시험, 각종 점검 등	○	
	• 시공실태점검 / 부실별점 관리	○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업무, 재난관리(안전 점검의 날, 각종 훈련 등) 업무	○	
	• 기술자문(심의) 구성 및 운영, 회의자료 및 업무계획, 용역 및 시공평가, 감사, 국회업무 등	○	
	• 품질검사 전문기관 관련	○	
• 건설관리실 시험 및 시험포장 승인 업무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도로시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시설 기능의 경우, 관리 대상의 차이 (일반국도, 지방도)가 있을 뿐 수행하는 기능은 집행적 성격이 크며, 현지성 및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 존재</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하천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관리 기능의 경우, 관리 대상의 차이 (국가하천, 지방하천)가 있을 뿐 수행하는 기능은 집행적 성격이 크며, 현지성 및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 존재</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건설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관리 기능도 위의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관리 대상만 다를 뿐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간에 유사 업무이므로 현지성 및 주민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 존재</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표 4-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정비 방안

중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도로시설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이 존재
하천관리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이 존재
건설관리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이 존재

## 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정책	• 해무업무	×	
	• 선박계 업무	×	
	• 선박구조변경허가 등	×	
	• 항만국통제	×	
	• 해기사업무, 선원공인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선원근로상담관	×	
	• 해사안전감독	○	
	• 항만시설(항로, 정박지)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	
	• 화물연대 등 사회적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 재난업무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도선사 수급계획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항만보안에 관한 사항	×	
	• 부두운영회사(TOC), 비관리청항만공사, 항만 운송(관련)사업, 예선업에 관한 사항, 항만하역요금 인가, 변경인가	×	
	• 항만시설사용(국가부두) 과내서무 항만운영	○	
	• 무역항 입출항 업무	○	
	• 항만운영통계	○	
	• 항만출입증 발급	×	
	• 항만종합상황실업무(항만보안,청원경찰, 특수경비원 근무감독)	×	
	• 충남 관할 국가어항 관리	○	
	• 항만공사 건설 용역업무 및 안전관련 업무	○	
	• 대신항 개발 업무	○	
	• 연안정비사업 관련	○	
	• 선박 기관업무 총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물품(유류)구매 감독관	○	
	• 항로 표지선 등대호 총괄 업무	×	
	• 항로표지시설 설치 및 개량공사 추진	×	
	•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및 관리	×	
	• 항로표지시설 관리 및 감독	×	
	• 항로표지선 운항 및 무인표지 점검	×	
	• 항로표지선 기관업무	×	
	• 등대호 갑판 점검 및 정비	×	
	• 등대호 선박 각종수당 청구	×	
	• 전마선 점검 및 정비	×	

중기능	소기능(단위 사무)	1단계 판단 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통신장비 관리.운용	×	
	• 해사안전시설관리, 점검 정비	○	
	• 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	×	
	• 관공선 통신운영.	×	
	• 용도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	
	• 무인표지관리원	×	
	• 격렬비열도 근무	×	
	• 항로표지시설물 점검정비	×	
해양 보전	• 순찰선 업무 총괄	×	
	•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	
	• 해양시설신고 관리	○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관리	×	
	• 무인도서 관리, 선박 수리 및 계선 신고	○	
	• 공사작업 허가	○	
	• 해수욕장 관리	○	
	• 선박기관운영	×	
	• 순찰선 선제 유지관리 개항 질서 업무 선박 서류 작성 업무	×	
	• 청소년 해양교육, 바다의 날 행사, 위험물 반입신고, 개항질서 및 관공선 운영 관리	×	
	•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	
	• 어업경영체 조사 등록 업무	○	
• 대산항 순찰 및 개항단속업무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등 해양 교통 사무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어 분야 특이성이 존재</li> <li>- 항만 건설 및 관리 기능의 경우, 관리 대상(무역항, 연안항)만 다를 뿐 이미 지자체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충분한 전문성이 축적되었으므로 이관 적합성이 존재</li> </ul>
해양보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수면매립·관리, 해양환경관리 등의 사무는 충남도청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성이 높아 이관 적합성이 있음</li> <li>- 순찰 업무와 관공선 운영 등의 사무는 다른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고 집행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관 적합성이 있음</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lt;표 4-22&gt;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정비 방안

중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은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이 존재하나, 일부 사무의 경우(항로표지 설치·관리 등) 분야특이성이 존재
해양보전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이 존재

## 7. 금강유역환경청

가. 1단계 판단(단위 사무 대상): 기능 중복성 여부

- 금강유역환경청의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기능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 1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lt;표 4-23&gt;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1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소기능	1단계 판단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환경관리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관리	○	
	• 환경산업체 관리	○	
	• 생태계 보전지역 보전·관리	○	
	• 특정도서 및 생태계 변화 관찰지역 모니터링 실시	○	
	• (국제적)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및 포획·채취 허가 등	○	
	• 환경영향평가	○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	
	• 사후관리	○	
	•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등	○	

중기능	소기능	1단계 판단기준 기능 중복성 여부	비고
	• 대기 및 토양측정망 운영	○	
	• 측정 및 점검시료의 시험·분석	○	
	• 수질 및 지하수 측정망 운영	○	
	• 화학물질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	
	•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	○	
	• 화학테러 등	○	
	•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	
	• 환경사범에 대한 사법수사	○	
	• 환경컨설팅 운영	○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 수질오염원 조사 등 환경기초조사연구	○	
	•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	
	• 주민지원사업	○	
	•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사후관리	○	
	• 수변구역의 관리	○	
	• 상수원 보호구역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평가	○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	
	•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등	○	
	•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 승인	○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 수질예보제 운영	○	
	• 대청호·보령댐 조류경보제 운영	○	
	•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관한 사항	○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	○	
	•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	
	• 금강환경지킴이 운영	○	
	•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관리	○	
• 하천오염행위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		
•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		

## 나. 2단계 판단(중기능 대상): 이관 적합성·분야 특이성

- 금강유역환경청이 수행하는 중기능을 대상으로 각 기능별로 기능 이관 적합성 여부와 분야 특이성 여부를 판단한 2단계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lt;표 4-24&gt;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2단계 판단 결과

중기능	2단계 판단 기준		판단 근거
	이관 적합성 여부	분야 특이성 여부	
환경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 기능은 충남도청에서 이미 상당부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 적합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지정폐기물 처리 사무는 현재 지자체에 수행 권한이 없으나 현재 지자체에서 일반폐기물처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수행 가능하며 기업체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기능은 충남도청에서 이미 상당부분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성 측면에서 이관 적합성이 존재함</li> <li>- 반면, 고도의 전문성이나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등의 분야 특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 다. 소결

- 이상의 판단 결과를 토대로 금강유역환경청의 기능에 대한 정비 방안 결과는 각 기능별로 다음과 같음

<표 4-25> 금강유역환경청 대상 정비 방안

중기능	정비 방안			판단 근거
	유지	이관		
		일부	전부	
환경관리			○	-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	-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청 간에 기능 중복성·이관 적합성 존재

## 8. 기능별 정비 방안 종합

-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별 정비 방안 결과를 요약한 바는 다음과 같음

<표 4-26> 충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별 정비 방안 요약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중기능)	정비 방안		
		유지	이관	
			일부	전부
대전충남중소기업청	기업지원		○	
	자금지원			○
	통상지원			○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천안기준)	고용정책			○
	노동정책		○	
	근로자복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기능	○		
	조정기능	○		
	정책기능		○	
대전지방보훈청	보훈 선양			○
	등록 및 보상		○	
	복지 지원			○
	제대군인 지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			○
	하천관리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중기능)	정비 방안		
		유지	이관	
			일부	전부
	건설관리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		○	
	해양보전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			○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전략

#### 1. 전제 조건

##### 가. 인력 및 재원의 동시이양 확보

- 충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재원의 동시 이양이 확보되어야 함(김재훈 외, 2008; 금창호, 2012)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이양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재원이 이양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능이양의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됨
-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인력과 재정의 동시 이양이 불충분했던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음
  -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성과를 살펴보면, 제주도로 이양된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앙부처와의 단절 및 지방재정 부담의 해결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3개 분야 기능 이관에 대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평가에서도 기능이관에 따른 분야별 인력, 자원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한 수입지자체의 업무처리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음

<표 4-27> 역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평가에서의 개선 과제

구분	평가(개선 과제)
제주 특별지방행정 기관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총리실 5년 종합평가</li> <li>- 중앙부처와의 단절 및 지방재정 부담의 해결이 제주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li> <li>-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의 성과 평가에서 개선과제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인력·재정지원 확대를 제시</li> </ul>
이명박 정부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추진위원회 평가</li> <li>- 이명박 정부 시절, 3개 분야(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에 대한 기능이관이 완료 되었으나 수입 지자체에서는 기능이관에 따른 분야별 인력, 자원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 호소</li> <li>- (자료: 지방분권추진위원회 1단계 정비완료 특행기관 이관사무 운영실태 점검결과(2012.7.11.))</li> </ul>

#### 나. 기능 단위 지방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사무 단위가 아닌 기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각 분야별로 사무 단위의 지방이양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위 사무로만 이양할 경우 다른 업무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관련 예산과 인력의 동시이양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시되고 있음
- 기능 단위의 지방이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정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 정책결정자의 의지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무엇보다도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 정권의 지방분권 정책의 세부과제로 항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성과는 각 정권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한표환, 2014)
-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우선순위의 정책순위에 두지는 않았고, 정부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중앙 기능의 지방이양을 채택하였음
- 노무현 정부는 당초에는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였으나 실제 정책 추진에서는 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평가됨
-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초점이 경쟁력에 있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고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정책 의지도 그리 크지 않았음

&lt;표 4-28&gt;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 기초 비교

구분	내용
김대중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구현</li> <li>- 기능중심적 개편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li> </ul>
노무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권형 선진국</li> <li>- 균형발전 &gt; 지방분권</li> </ul>
이명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일류국가</li> <li>- 지방분권 → 지방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li> </ul>

자료: 한표환(2014), p.89.

## 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단계별 추진 전략

- 단기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이후 시뮬레이션 검토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대내적으로는 역대 정비정책 성과 및 보완점 검토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시뮬레이션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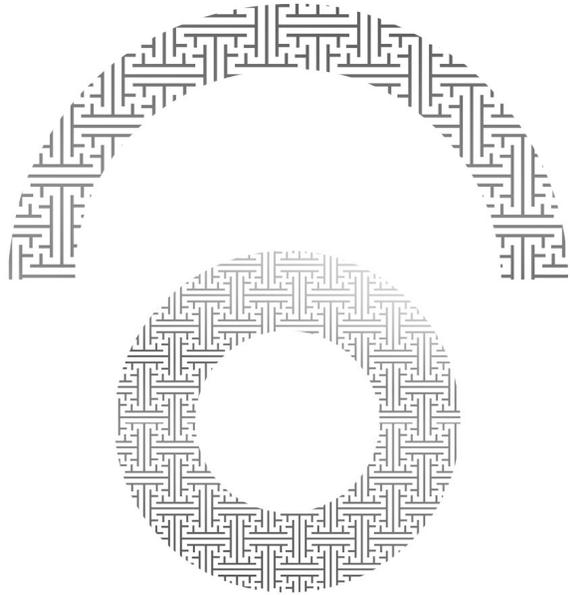
- 대외적으로는 정책관련 집단의 지지 확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회대토론회, 공청회 개최, 관련 학회와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역량 있고 효율적인 집행조직이 구성 되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정책이 지속성과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정부의 기능과 국가 기능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함
  - 도 본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이관의 대상이 되는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인력·예산 관련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대정부 창구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양 기능 중 인접 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기능의 경우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능 이관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 지침 등이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전문성 확보,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 등 국가 기능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4-29> 지방이양 단계별 추진 전략

구분	추진 전략
1단계(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행 지방이양 이후의 시뮬레이션 마련</li> <li>• 지방이양에 관한 지지와 공감대 확보</li> </ul>
2단계(중·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 있고 효율적인 집행조직 구성</li> <li>•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방안 마련</li> <li>• 지방정부의 기능과 국가 기능과의 연계성 문제 지속적 검토</li> </ul>

#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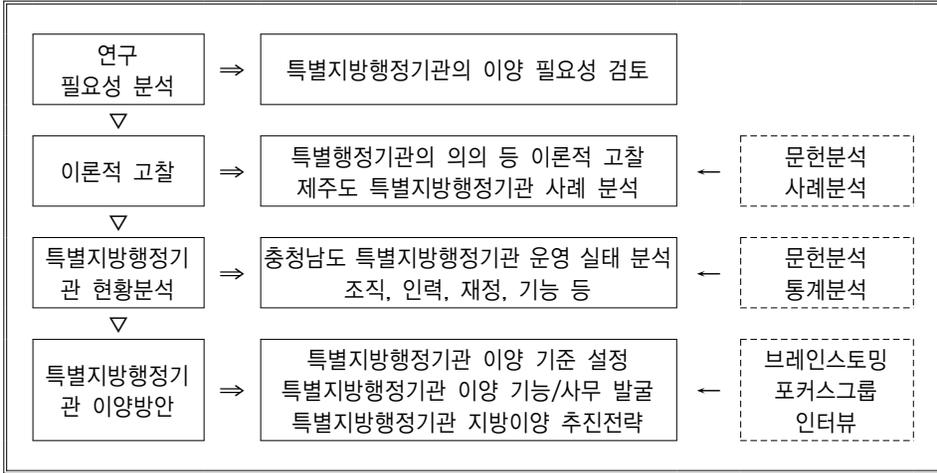
## 제5장

##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수 차례의 건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의 반발, 추진력의 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과 2008년에 전면 개정된 「지방분권에관 한특별법」,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및 사무를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통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대정부 정책건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7대 분야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양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및 사무를 추출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천안지청·보령지청),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대상이 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기준은 선행 연구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설정함
- 이를 위하여 기존 특별행정기관 이양 사례에 관한 문헌 분석, 통계자료 분석, 면담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 다각도의 연구 방법을 활용함

<그림 5-1> 연구의 체계



○ 먼저 본 연구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판단기준을 <그림 5-2>와 같이 제시하였음

- 1단계는 단위 사무를 대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기능 중복성을 검토함
- 2단계에서는 지자체 BRM 분류 체계에 의한 중기능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행이 적합한지를 살피는 이관적합성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존립이 적합한지를 살피는 분야특이성을 검토함

<그림 5-2> 본 연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 판단기준

단계	판단기준	측정지표	분석 대상
1단계 판단	기능 중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목적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공히 처리하는 기능</li> <li>- 중앙과 지방의 동일한 사무</li> </ul>	단위 사무
↓			
2단계 판단	이관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보다 적합한 기능</li> <li>- 파급효과가 전국적이 아닌 사무</li> </ul>	중기능

단계	판단기준	측정지표	분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현지 적합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의 기존기구로 수행 가능한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효율성이 높은 사무</li> </ul>	
	분야 특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효율성 이외의 특행별 존립가치에 해당되는 기능</li> <li>-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무</li> <li>-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li> </ul>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여부의 최종 판단

○ 이상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도출된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별 정비 방안은 <표 5-1>과 같음

<표 5-1> 충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별 정비 방안 요약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중기능)	정비 방안		
		유지	이관	
			일부	전부
대전충남중소기업청	기업지원		○	
	자금지원			○
	통상지원			○
천안·보령고용노동지청 (천안기준)	고용정책			○
	노동정책		○	
	근로자복지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기능	○		
	조정기능	○		
	정책기능		○	
대전지방보훈청	보훈 선양			○
	등록 및 보상		○	
	복지 지원			○
	제대군인 지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중기능)	정비 방안		
		유지	이관	
			일부	전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			○
	하천관리			○
	건설관리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정책		○	
	해양보전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			○
	유역 및 상하수도 관리			○

- 이와 같은 정비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과 장·단기 추진전략이 요구됨
  - 인력 및 재원의 동시이양 확보, 기능 단위 지방이양, 정책결정자의 의지라는 전제조건이 요구됨
  -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이후 시뮬레이션 검토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특행 이양 정책이 지속성과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있고 효율적인 집행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인근 자자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과 지방정부기능과 국가기능과의 지속적인 연계방안 마련 등의 전략이 필요함

## 제2절 정책적 함의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과제이나 여전히 그 성과는 미미함

- 2003년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부터 최근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반발, 추진력의 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궁극적으로 정책 수혜자인 주민의 관점에서 필요함
  -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필요함
  - 또한 국가 경쟁을 넘어 자치단체 간 국제적 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함
- 다만, 그 결과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개혁 사례들을 참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혁 과정에서 지나친 예산절감을 하여 행정업무처리의 경제적 능률성과 전문성 및 업무처리의 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 금창호·박용성·최승범.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 금창호·민 기·최영출·홍준현. (201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강화 연구 용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배. (2006). 공공서비스 전달의 적정 거버넌스 모형 모색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27-48.
- 김재훈·남궁근·정광호·김기환.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추진전략 연구」. 한국행정학회 용역보고서
- 소진광·이승중·이기우·윤두섭.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재정립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
- 안영훈. (2012). 이명박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실적 평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양영철. (2009). 기획논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3(2): 59-100.
- 양영철·민 기·남진열·황경수·오승은·허향진·하승수·김효명.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 오재일·한장희.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에 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1-33.
- 우윤식. (201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타당성 검토 : 국도와 국가하천 사례. 「국토연구」. 76: 149-169.
- 이시철. (200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양 논의의 쟁점과 방향. 「지방정부연구」. 11(2): 25-46.
- 이은재. (1997).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정립 방안. 「지방행정연구」.

- 12(3): 1-19.
- 이환범 외. (2011).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대응: 지방자치단체 이관 분야별 기능비교 분석을 토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127-156.
- 이현우·이미애.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대응방안: 기구·인력·재정 조정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분권형 선진국가를 위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6).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
- 정원식·안권욱. (2009). 독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을 통한 기능적 행정체제개편의 성과와 영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9(3): 25-52.
- 제주특별자치도. (2007a).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제주특별자치도 \_\_\_\_\_ . (2007b). 「제주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_\_\_\_\_ . (2007c). 「특별자치도 출범, 그간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2012).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방안」.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보고서.
- 한표환. (2014). 역대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정책 비교평가. 『지방행정연구』. 28(4): 73-97.
- 행정안전부. (2008).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검토 보고」. 행정안전부.